

| SRI-전략-2023- 08 |

# 수원시 이주민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Social Participation of Migrants in Suwon City

이영안



# 연구요약

## 연구목적

- 이주민 관련 지원 정책은 한국사회 적응 및 정착과 같은 수동적인 형태를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정책의 변화가 요구됨
- 수원시 이주민 지원 실태 및 현황 분석, 이주민 및 유관기관 현장 실무자 대상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수원시 이주민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제시

## 주요 내용 및 결과

- 이주민 사회참여 개념 및 범위
  - 수원시 이주민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수원시 정책형성 과정 등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고, 다른 지역사회 구성원과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활동
  - 이주민이 선주민과 함께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
  - 사회참여를 개인 영역, 사회 영역, 기타 영역으로 구분하고, 그 중 지역주민 활동, 지자체 관련 활동, 이주민 단체 활동인 '사회 영역'을 이주민 사회참여 범위로 설정
- 이주민의 시정 참여
  - 수원시정 참여에 적극 동의하며, 수원시 위원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관련 '사전교육' 필요
  - 주민자치 위원 선출 및 이주민 집중 거주 지역 내 이주민 통장 제도 시범사업 실시
- 지역주민활동 및 단체활동
  - 코로나19 이전에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커뮤니티(자조모임)의 활성화 요구 및 선주민과 함께 운영 필요
  - 홍보의 다양화 등 이주민의 사회참여 활동 개선 및 이주민 자체의 역량을 강화

## 활성화 방안

### □ 수원시 위원회 참여

- 위원회 특성 및 성격 혹은 안건 내용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준비 단계 필요

### □ 이주민 명예통장 제도 시범 실시

- 수원시 내 이주민 밀집지역인 매산동, 세류동, 고등동 등을 대상으로 '이주민 명예통장 제도' 시범 실시

### □ 주민자치회 및 동협의체 참여

-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주민자치의 선도적인 역할 실시
-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동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여 지역 내 이주민의 다양한 사례 발굴 및 서비스 연계·제공 도모

### □ 토론회 및 공청회 참여 활성화

- 지역사회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건에 대해서 이주민 본인의 의견 개진 및 토론을 함으로써 공식적인 교류의 장 마련

### □ 선주민의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확대

- 이주민에 초점을 맞춘 시혜적인 교육 관점에서 벗어나 선주민의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확대를 통해 편견 극복 및 이주민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

### □ 선주민과 함께 커뮤니티 구성 및 운영

- 커뮤니티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이 공식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선주민이 멘토 혹은 리더로서의 가교 역할 수행

### □ 이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 다양한 사회참여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개발 및 운영

# 차례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 제2장 이주민 사회참여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이주민 사회참여의 의의 .....	9
제2절 이주민 사회참여 활성화 .....	16
제3절 소결 .....	20

## 제3장 이주민 현황 및 정책

제1절 이주민 현황 .....	25
제2절 이주민 사회참여 정책 .....	37
제3절 소결 .....	46

## 제4장 이주민 조사 결과

제1절 심층면접조사 개요 .....	51
제2절 심층면접조사 결과 .....	54
제3절 소결 .....	60

## 제5장 이주민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제1절 연구요약 및 의의와 한계 .....	65
제2절 활성화 방안 .....	67

# 표차례

표 2-1   법과 정책에서 이주민 관련 용어와 정의 .....	11
표 2-2   정책대상에 따른 관련 부처별 용어 .....	13
표 2-3   사회참여 범위 .....	15
표 3-1   연도별 이주민 현황 .....	25
표 3-2   유형별 이주민 현황 .....	27
표 3-3   국적별 이주민 현황 .....	28
표 3-4   외국인근로자 현황 .....	29
표 3-5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별 현황 .....	30
표 3-6   외국인근로자 국적별 현황 .....	30
표 3-7   결혼이민자 현황 .....	31
표 3-8   결혼이민자 체류기간별 현황 .....	32
표 3-9   결혼이민자 국적별 현황 .....	32
표 3-10   유학생 현황 .....	33
표 3-11   유학생 체류기간별 현황 .....	34
표 3-12   유학생 국적별 현황 .....	34
표 3-13   이주민 집중거주지 현황 .....	36
표 3-14   2022년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	39
표 3-15   주요 중앙정부의 이주민 관련 정책 추진방향 .....	40
표 3-16   2023년 수원시 이주민 사회참여 관련 정책 .....	42
표 3-17   수원시 거주 이주민 시정참여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42
표 3-18   외국인주민 다(多)누리꾼 운영 .....	43
표 3-19   다문화가족 동아리 모임 현황 .....	44
표 4-1   이주민 대상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특성 .....	51
표 4-2   이주민 유관기관 실무자 대상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특성 .....	53
표 4-3   심층면접조사 주요 내용 .....	54

# 그림차례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 .....	5
그림 3-1   외국인 정책 위원회 .....	38
그림 5-1   청주시 외국인 주민 명예 이·통장 모집 공고 .....	68
그림 5-2   수원시 금곡동 주민자치회 .....	69
그림 5-3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홈페이지 .....	70
그림 5-4   수원특례시 with 이주민 개최 .....	71
그림 5-5   성인과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 .....	72
그림 5-6   수원시 이주민 지원 기관 이용자 거주기간 .....	74



## 제1장

#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연구 배경

최근 한국사회로의 이주민 유입은 우리사회를 급속히 다문화·다인종·다민족 사회로 견인하고 있다. 체류 외국인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2,524,656명으로 정점을 찍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2,036,075명, 2021년 1,956,781명으로 2년 연속 감소하였다(행정안전부, 2022). 이와 같은 현상은 일시적 상황으로 볼 수 있으며, 다문화·다인종·다민족 사회로의 진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화 시대에 이주민들과 상생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만 이주민의 증가는 불법체류 및 이주민 집중 거주 지역에 대한 안전 불안감 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도 종종 목격된다. 이를 Urban Dictionary에서는 제노포비아를 ‘낯선 사람 혹은 외국인, 잘 알지 못하는 존재에 대해 두려워하는 태도’로 정의하는데, 즉 자신들과 다른 외국인, 이방인 혹은 이주민에 대하여 비이성적인 혐오 혹은 증오를 의미한다(김상운, 2016).

선주민과 이주민의 갈등은 낯선 것, 특별한 것에 대한 두려움 혹은 다른 민족에 대한 비이성적인 증오 또는 두려움에서 시작되므로 이주민과 선주민의 ‘접촉 기회’를 늘리고 이주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책과정 및 사회참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주민의 올바른 참여로 이끌어야 한다(최영미 외, 2015).

특히 이주민 수의 증가는 불가피하므로 이러한 변화는 좁게 보면 개인생활뿐만 아니라, 넓게는 우리사회 전체에까지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므로 이주민을 존중하고 서로 소통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는 등의 이해를 이끌어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수원시 이주민이 선주민과 공생·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수원시 이주민의 사회참여 활성화가 매우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이주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변화와 자유로운 사회참여 등을 보장하는 다양한 정책이 요구된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수원시가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와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등을 통해 이주민이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고 존엄한 인격체로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

로, 이를 토대로 시혜적 차원의 접근이 아닌 수원시 이주민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수원시 이주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이끌어내어 한국사회 적응 및 정착에만 치우쳐 있던 정책들을 이주민의 사회참여 활성화로 전환되는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에는 사회참여를 넘어 이주민 개인이 우리사회에 일방적으로 적응하고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주민이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정서적 지지를 얻는 관계망과 지역사회 내에서 문화 간 접촉 및 사회관계 형성 등 사회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함이다.

---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 1. 연구 범위

수원시 이주민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원시 이주민 현황 및 정책 분석 등을 문헌 연구 및 통계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며, 본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적 범위는 수원시 행정구역인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로 설정하여 수원시 이주민 사회참여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시간적 범위는 2023년 단년으로 설정하여 수원시 이주민의 사회참여 현황 등을 분석한다.

셋째, 내용적 범위는 수원시의 이주민 현황, 이주민 관련 정책 및 법령, 조례 등으로 수원시 이주민 지원 실태 및 현황을 분석하고, 수원시 거주 이주민 및 유관기관 관계자, 담당 공무원 대상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수원시 이주민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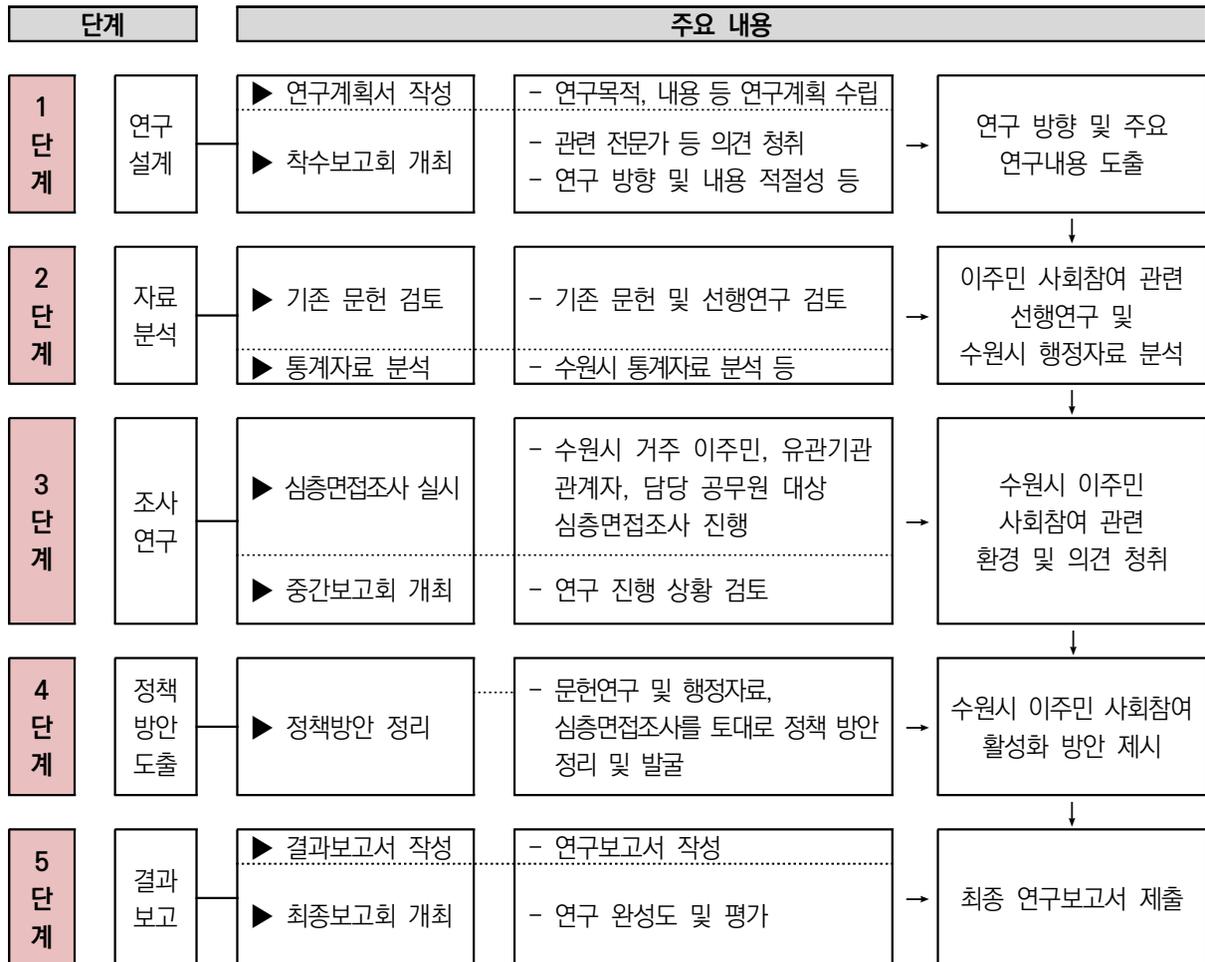
###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추진체계는 다음 <그림 1-1>과 같으며,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문헌연구 및 통계, 행정자료 분석이다. 문헌연구를 통하여 이주민의 현황 및 관련 법령, 수원시 이주민 정책 현황 등과 같은 제도 분석을 시도한다. 문헌연구는 공식적인 자료를 토대로 수원시 이주민 사회참여와 관련된 현황 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동시에 통계,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수원시 이주민 현황 및 특성 등을 분석한다. 이는 수원시 이주민의 일반적 특성 및 이주민 사회참여 등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둘째, 수원시 이주민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원시 거주 이주민, 유관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실시하여 객관적인 문헌연구 및 통계, 행정자료에서 확보되지 못한 현황 및 문제점에 관한 질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이주민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1 | 연구 추진체계





## 제2장

# 이주민 사회참여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이주민 사회참여의 의의

제2절 이주민 사회참여 활성화

제3절 소결



## 제2장 이주민 사회참여의 이론적 배경

### 제1절 이주민 사회참여의 의의

#### 1. 이주민 사회참여 논의의 등장

최근 한국사회는 인적교류의 활성화와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주여성의 급증 등으로 거주 외국인 100만 명 시대가 열리면서 다민족·다문화 사회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제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화 시대에 외국인 주민들과 상생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좁게 보면 개인생활, 넓게는 우리 사회 전체에까지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주민의 증가는 우리 사회에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외국인근로자는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불법체류자의 증가에 따른 이주민 관리의 어려움과 관련 범죄 등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등의 많은 사회적 문제 및 비용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관련 이슈는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 해소라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과 다문화가정 자녀 등에 대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처럼 다민족·다문화사회의 도래는 기존과는 다른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기존의 이주민 정책은 한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으나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주민이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선주민과 함께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정비하는 것에 대한 수요 및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정석 외, 2008).

관련하여 양기호(2006)는 이러한 요청을 ‘(거주)외국인 대책’과 ‘내향적 국제화’라는 용어로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거주)외국인 대책은 본 연구에서는 이주민 대책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이주민 대책’이란 지방정부의 일차적인 정책대응으로 제도나 시설을 통하여 이주민이 살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주민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적 지원을 말한다.

이에 반해 ‘내향적 국제화’란 ‘이주민 대책’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국제화 의식을 제고하고, 다문화 공생 사회의 실현을 지향하는 보다 포괄적인 것을 말한다. 현재까지 우리의 지방정부는 이주민을 주로 관리 대상 혹은 한국사회 정착 및 적응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다면, ‘내향적 국제화’를 위해서는 이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사회 구성원 혹은 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대책 마련과 함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이정석 외, 2008).

특히 법무부의 「202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중 수원시가 속해 있는 경기도의 2022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고용·노동 실태조사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외국인노동자 수급 관련 등 정책방안 마련, 현장 소통형 거버넌스(시·군, 민간, 외국인) 운영, 중앙부처와의 협업(제도개선, 정책건의) 시스템 구축이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문화다양성 이해 교육 대상자 확대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다. 셋째, 외국인 주민 맞춤형 정보 제공 및 도정 참여 확대(경기 외국인 SNS 기자단 운영 등), 각 지역별 실정에 맞게 외국인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NGO 대상 우수 프로그램 공모 확대이다.

이처럼 경기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도 전반적으로 선주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소통형을 기조로 도정 참여를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경기도에 속해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를 빗대어보면 수원시 거주 이주민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과 연결되며, 실제로 수원시 거주 이주민의 사회참여가 활성화되어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의 능력 및 역량을 충분히 발휘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의 발전에서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이주민은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으로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역사회 활성화 및 시정발전 등을 위해 이주민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등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 2. 이주민 개념

세계화로 인한 노동과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인구구조 및 다양한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이주(Migration)는 최근 가장 논쟁적인 화두 중 하나이다. 여기서 이주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주로 가족결합, 노동(경제), 인도주의 차원 등이 있으며, 가족결합은 이주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이다. 노동 혹은 경제 이주는 취업을 목적으로 행해지며, 인도주의 차원의 이주는 난민에 해당된다(송해련, 2019).

이렇듯 이주의 다양한 목적에 따라 이주민의 개념 또한 다양하게 정의 내려지며, 본 연구의 주목적이 이주민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이므로 연구 대상을 특정 이주민 집단으로 국한하거나 혹은 한국 국적 취득 여부가 연구 대상 선정 기준이 될 필요성이 높지 않다. 다만 단기 입국 이주민보다는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장기 입국 이주민이 주요 대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주민은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외국인근로자이다. 여기서 외국인근로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노동자 혹은 이주노동자 등 다른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며, 여기서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노동자

(이주노동자)는 동일한 대상으로 지칭되지만 외국인근로자는 주로 법률체계나 정부의 공식문서, 외국인노동자(이주노동자)는 주로 노동조합 혹은 사회운동단체를 비롯해 인권문제 등을 다루는 연구에서 언급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와 이주노동자는 전자가 ‘내국인’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것을 강조한다면, 후자는 국제노동력 이동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이정석 외, 2008).

대부분 이들은 및 동남아시아 등에서 노동공급이 부족한 산업 영역에서의 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자이고, 급격히 발전한 산업사회로의 전환에서 고임금화, 자국민의 3D 업종 기피 현상 등은 우리나라 내 ‘외국인근로자’ 증가 및 이주민 증가를 촉진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8).

둘째, 결혼이민자이다. 결혼이민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후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가리킨다(박종보 외, 2006). 그러나 ‘결혼이민자’라는 용어도 법률 및 부처마다 지칭하는 대상에 차이가 있다. 대표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정의하는 ‘결혼이민자 등’은 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②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즉, 혼인을 목적으로 국내 입국한 외국인은 ‘결혼이민자’로 분류되어 국적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정책 대상자로 고려되지만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결혼이민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의미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는 ‘결혼이민자’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논란이 있다(이창원, 2015).

이처럼 이주민 정의 및 범주 등 관련된 논란은 법률이나 정부 문서에서 조차 서로 다르게 지칭되고 있어, 이주민 대상 정책 수립 등에 혼선을 주고 있으며(유민이, 2019; 이창원, 2015), 정부 부처별 이주민 관련법과 정책 및 용어를 살펴보면 다음 <표 2-1>과 같다.

표 2-1 | 법과 정책에서 이주민 관련 용어와 정의

구분	이주민 관련 용어	정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재한외국인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	- 결혼이민자와 출생·인지·귀화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 - 인지·귀화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와 출생·인지·귀화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
	결혼이민자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결혼이민자 - 귀화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외국인 주민	-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90일 미만 단기 체류자 제외) - 한국 국적 취득자(혼인귀화자, 그 외 국적 취득자) - 외국인 주민 자녀

	외국인 주민 자녀	-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자녀로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녀
교육부 다문화 학생통계	다문화가정 자녀	-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국내 출생 자녀와 중도입국 자녀 - 외국인가정 자녀

자료: 이창원(2015) 「이주민 분류방식 및 용어 사용의 부처별 차이와 문제점」, 유민이(2019), 「이주민에 대한 국민수용성 제고 사업 추진 현황 및 과제」, 변수정 외(2021), 「사회통합의 또 다른 시각」에서 재인용

마지막으로 유학생은 법무부의 체류자격 구분 중에서 ‘유학(D-2)’과 ‘일반연수(D-4)’자격으로 체재하고 있는 외국인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법무부의 체류자격 중 ‘유학(D-2)’은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를 가리키며, ‘일반연수(D-4)’는 ‘유학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를 가리킨다(이정석 외, 2008).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유학생은 유학과 국어 연수 비자를 소지하고 유학생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정의되지만(강수향, 2011), 한국정부는 유학생 유치 및 정책을 교육 정책뿐만 아니라 ‘우수 외국인력 유치 지원’과 ‘유학생들의 한국사회 적응 지원’이라는 숙련 노동력 유치 정책과 이주민 통합 정책과 관련지어 설정하고 있다(설동훈, 2017).

한편 이주민과 관련하여 정책대상에 따른 부처별 용어 사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 <표 2-2>와 같다. 먼저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는 관련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주무부처 여성가족부로 ‘결혼이민자 및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이주배경 청소년’은 관련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 주무부처 여성가족부로 ‘외국인 주민 자녀 및 중도입국 청소년, 탈북청소년’을 말한다.

‘외국인노동자’는 관련 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주무부처 고용노동부로 ‘고용허가제 입국 외국인노동자’를 일컫는다. 마지막으로 ‘기타 체류 외국인’은 관련법령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주무부처 법무부 및 교육부 등으로 ‘결혼이민자, 동포, 유학생,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등’을 일컫는다. 이렇듯 ‘이주민’ 혹은 ‘외국인 주민’ 등 구성 범위에 대한 불명확함과 모호함이 지속되고 있다(정동재 외, 2022).

표 2-2 | 정책대상에 따른 관련 부처별 용어

관련 용어	관련법령	주무부처	정의	대상
다문화 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여성가족부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 -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결혼이민자 및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이주배경 청소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외국인 주민 자녀, 중도입국청소년, 탈북청소년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의미 - 단,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함	고용허가제 입국 외국인노동자
기타 체류 외국인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법무부, 교육부	-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을 말한다.	결혼이민자, 동포, 유학생,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등

자료: 정동재 외(2022),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방안 설계」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이주민’을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초과하여 체류한 자’로서 ‘수원시에 등록되어 있으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 3. 이주민의 사회참여 개념 및 범위

사회참여라는 개념은 인간의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 형성의 주요한 기제로서 C.H.Cooly가 사회집단을 원초적 집단(Primary group)과 2차적 집단(Secondary group)으로 구분했던 것 중 2차적 집단에 해당한다. 원초적 집단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적인 집단 활동 참여와 별개로 2차적 집단은 구성원 간의 협동과 효과적인 활동 등을 위한 공식적 조직을 통해 공통된 목적이나 관심 등을 추구하기 위한 집단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선경, 2011에서 재인용).

더불어 Eberts(1972)는 사회참여를 ‘한 사회집단이 필요와 요구를 나타내고 공동이익을 옹호하며 특정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조직적인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강수향, 2011).

본 연구에서는 이주민의 사회참여 실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고자 폭넓게 정의하여 '수원시 이주민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수원시 정책형성 과정 등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고, 다른 지역사회 구성원과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활동'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주민의 시정(市政) 참여인 공식적인 활동에 대한 방법을 다방면으로 고려해야 하고, 이주민의 비공식적인 만남과 자발적인 활동에 대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로 이주민이 본격적으로 유입된 시기는 1990년대 이후로 산업연수 형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결혼이주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결혼이주의 경우에는 2000년대 이후 결혼중개 업체를 통한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들의 결혼이주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고,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모두 포함)은 2,134,569명으로 국내 전체 인구의 약 4.1%에 이르고 있다(행정안전부, 2021).

이주민과 관련된 정책은 대부분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되어 지방정부로 하달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중요정책대상으로 선정하는 특정 유형의 이주민에게 적용되는 복지서비스 및 정책 등이 집중되어 예산이 편성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은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다. 특히 이주민 역량 강화 및 선주민과의 통합을 유도하는 정책이 부족하여 여전히 시혜적인 정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이정석 외, 2014).

앞으로는 시혜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이주민의 사회참여 및 시정참여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선주민과 함께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여 종국에는 사회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주민 사회참여와 관련하여 황정미(2009)는 사회참여의 범위를 문화·교육 영역, 자녀 교육 영역, 경제 및 취업 영역, 지역주민활동 영역, 지자체 관련 활동 영역, 이주민 단체 활동 영역, 기타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활동 사례로는 문화·교육 영역에서 한국어 교실 및 문화강습, 자녀 교육 영역에서 자녀 보육 및 교육 참여, 학부모회 활동, 경제 및 취업 영역에서 경제활동 및 창업, 농업 등, 지역주민활동 영역에서 반사회, 부녀회, 마을 관련 활동, 지자체 관련 활동 영역에서 도청 및 시청 등 이주민 참여프로그램, 이주민단체 활동 영역에서 NGO, 이주민 자조모임 등, 기타 영역에서 지역행사 및 축제 참여 등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영역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문화·교육 영역, 자녀교육 영역, 경제 및 취업 영역은 개인 영역으로 구분하고, 지역주민활동 영역, 지자체 관련 활동 영역, 이주민 단체 활동 영역은 사회 영역으로 구분하며, 지역행사, 축제 참여 등은 기타영역으로 구분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사회참여'는 지역주민 활동, 지자체 관련 활동, 이주민 단체 활동인 '사회 영역'이다(〈표 2-3〉 참조).

표 2-3 | 사회참여 범위

참여영역	참여정체성	사례	구분
문화·교육	주민으로서	한국어교실, 문화강습, 동아리활동 등	개인 영역
자녀교육	엄마로서	자녀보육 및 교육 참여	
경제 및 취업	노동자로서	경제활동, 창업, 노동자 관련 활동	
지역주민 활동	시민사회 행위자로서	반사회, 부녀회, 마을 관련 활동, 방과 후 관련 활동, 자원봉사 등	사회 영역
지자체 관련 활동		도청, 시청, 군청 등 이주민 참여 프로그램	
이주민 단체 활동	이주자로서	NGO, 이주민 자조모임, 이주민 이익대변	
기타	기타	지역행사, 축제 참여 등	기타 영역

자료: 황정미 외(2009),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현황과 증진방안」 p.37을 토대로 재구성

## 제2절 이주민 사회참여 활성화

### 1. 이주민 사회참여 활성화의 필요성

한국 사회는 과거로부터 하나의 인종 혹은 민족 정체성을 강조하고 그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문화는 흔히 사용되는 단일민족, 한 핏줄 등의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이와 반대로 2020년 기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204만 명 정도로 전체 인구의 약 4%를 차지하고 있다(KOSIS 국가통계포털통계청, 2020).

국제적으로도 국가 간 이동이 용이하고 그만큼 한국에 이주민(외국인)의 유입이 증가하는 경향을 고려하면 한국 사회의 민족 특성을 나타내던 표현의 적절성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점차 증가하면서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고 하지만, 오랜 시간 인종이나 민족의 다양성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지 않았던 한국인의 태도는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 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변수정 외, 2021).

그러나 이주민의 증가는 우리 사회에 좁게는 개인 생활에, 넓게는 우리 사회 전체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초래하고 있다. 일례로 외국인근로자의 증가로 인해 중소기업 및 선주민이 꺼리는 3D업종의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반대로 법과 법률의 틀에서 벗어난 불법체류자의 증가의 문제가 야기 되면서 관리의 어려움 및 범죄로 인한 국민 불안 가중 등 부가적인 사회적 문제 및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이정석 외, 2008).

이처럼 이주민 증가로 인한 다민족·다문화 사회의 도래는 정부(중앙·지방)의 정책변화를 요청하고 있으나 여전히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넘어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주민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고 통합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적 변화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지역 사회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바로 이주민의 사회참여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과거와 비교하면 인구의 국가 간 이동은 매우 증가하여 단일민족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한국도 예외 없이 외국인, 이주민 등이 증가하였다. 그 결과 지금 한국 사회 내에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 등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다양성이 증가하는 만큼 사회 내에서 여러 갈등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더욱이 한국 사회 혹은 한국인은 다른 인종 및 문화에 대한 깊은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는 외국인, 이주민과의 공존을 위한 노력이 필연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이정석 외, 2008).

현재 한국 사회는 이러한 노력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지만 여전히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갈등 등이 일상생활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되기도 한다. 예컨대 결혼이주여성, 외국인근로자(이주노동자), 유학생, 난민 등 각기 다른 이유로 한국에 입국하여 생활하고 있는 이주민 중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기

도 하지만 처음 입국시의 기대와는 달리 한국에서의 생활에 실망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이주민 분들도 다수 있을 것이다. 이들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고 사회참여를 통해 성취 및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여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이주민이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에는 물리적인 불편함도 있겠지만, 인식적인 차별이나 편견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심리·정서적인 불편함이 더욱 클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불편함은 이주민뿐 만 아니라 선주민에 속하는 한국인에게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주민과 선주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더불어 잘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을 깊이 있게 함께 해야 할 시점이다(변수정 외, 2021).

## 2. 이주민 사회참여 관련 선행연구 고찰

이주민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진행되어 왔지만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주민의 사회통합 및 사회참여 등을 포괄하는 연구 등은 2000년대 이후에 시작되었고, 이주민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현상에 반해 현재 한국 사회 내에서 이주민 사회통합 및 사회참여 등과 관련된 연구는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변수정 외, 2021).

다원화된 사회에서 다문화주의가 새로운 국가통합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나 한국에서의 다문화 및 이주민 관련 정책은 단일민족주의라는 이념에 맞서는 획기적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대상이 제한되어 있고, 정책 과정에 대상 집단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으며, 한국사회로의 동화만을 강조하고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성은혜, 2011).

또한 이주민(외국인) 관련 정책은 대부분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정책체계가 지방정부로 하달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져 왔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중요 정책대상으로 삼는 특정 유형의 이주민(외국인)에게만 복지서비스 등이 집중되는 등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다(박세훈, 2011; 정미애, 2011; 이혜진, 2012; 정명주, 2012; 최병두, 2012; 하영수, 2012; 이정석 외, 2012에서 재인용).

과거의 국내 이주민 관련 연구는 국가 단위 시각에서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실제 이주민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공간은 지역사회이므로 이주민에게 실제로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공간이라는 개념이 지역사회로 확대되었다. 그동안 이루어진 이주민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주민 대상으로 생활실태 조사 및 정책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의 방안을 모색하는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대부분 결혼이민자에 관한 연구로 이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드물게 유학생에 관한 연구도 수행된 바 있지만 역시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정기선 외, 2012).

박세훈(2011)은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 중 광역시를 제외하고 이주민 인구 비중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도시를 '외국인 집거도시'로 설정하여 11개 도시의 외국인 정책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 집거도시’의 외국인 정책이 가장 활발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의 외국인 정책에 머물러 있음을 밝혀냈다. 즉, 이주민의 즉각적인 필요에 대응하는 긴급지원 형태의 정책이 주를 이루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선주민과의 통합 등을 유도하는 정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이정석 외, 2012). 특히 기존 이주민 관련 연구들은 현재 지역 단위 이민·사회통합 정책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 지적된 것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어떤 특정 대상 혹은 분야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이정석 외, 2008).

이주민과 관련하여 실시된 지역단위의 연구들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기관에서 수행된 경우가 많으며, 주로 특정 이주민(외국인) 집단을 대상으로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이들의 어려움이나 현 정책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차원에서의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접근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기존 연구는 연구대상에 포함된 외국인 유형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일례로 결혼이민자에 대한 연구가 대표적이다(정기선 외, 2012).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이들은 다양한 행정 수요 및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정책에 잘 반영되지 못하여 특정 이주민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부산학연구센터(2011) 부산시 다문화 지원 사업은 과포화 상태이지만, 모든 지원 사업 단체가 비슷한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주민의 욕구를 제대로 충족 시켜 주고 있는지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정기선 외, 2012).

이와 같이 이주민 정책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이주민(외국인)정책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으나 지역사회 내에서 이주민과 선주민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방식으로 사회참여를 할 수 있게 이끌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긴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한편, 한국보다 일찍 이주민의 증가를 경험한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의 이주민 정책에 관한 연구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渡戸(2009)는 이주민 정책을 ‘응급대책기(1980년대)’, ‘지원·참여정책기(1990년대 후반)’, ‘통합정책기(2000년대)’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응급대책기’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주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시정참여 및 사회참여 등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제도 및 정책이 다소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주민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사회참여정책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므로 이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심층면접조사 등을 통해 이주민의 수요와 의견을 살펴본 후 지역사회 내에서 구성원으로서 시정참여 및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검토 및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주민의 시정 참여 방식은 참여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첫째, 소극적인 의미의 시정참여로 이주민이 정책 대상으로 설정되는 것이다. 이는 선주민과 동일선상에서 시정 전반에 걸쳐 이해관계자 및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주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및 기관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이주민의 존재를 간과할 수 없을 만큼 이주민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주민이 정부(중앙 및 지방)의 정책 입안을 비롯한 정책과정에 있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여 시정참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둘째, 이주민 스스로 참여의 주체가 되어 시정에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일례로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이주민 관련 행사에 및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주민끼리 커뮤니티 형성 및 권리 옹호를 위해 동일한 목소리를 내는 것 등 다양한 유형이 여기에 포함된다.

셋째, 가장 적극적인 의미의 시정참여로 이주민이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행사하는 것이다.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여 이주민의 참정권 등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5조, 「주민투표법」 제5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영주권을 가지고 거주요건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이주민에게 예외적으로 지방참정권을 인정하고 있다(이정석 외, 2012).

여기에는 지역사회 내의 반사회나 각종 위원회 및 자문회의 등에 자문위원으로 출석하거나 이·통장 등으로 역할하며 지역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봉사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러한 정책결정 과정이나 투표 등에 참여하여 실제로 정책형성 및 시정 참여 이해당사자로서 의견을 제시한다면 시정 및 사회참여 활성화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이용승 외, 2013).

즉, 이주민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이주민과 선주민과의 소통과 네트워킹이 매우 중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점이 되어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어야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수원시 이주민 시정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보고자 한다.

### 제3절 소결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의 증가는 앞으로 더욱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들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는 선주민의 자세 및 태도도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체류하는 이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연구들도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이주민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시혜적인 성격이 강하고, 소극적인 영역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주민과 선주민의 언어적 및 문화적 간극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줄여나가고, 이주민의 사회참여 및 시정참여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과제가 남아있다.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에서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초과하여 체류한 자로서 수원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수원시에 등록되어 있으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으로 정의한다.

이처럼 입국일로부터 90일 초과하여 체류한 자를 이주민이라고 한다면 초기에는 언어습득 등과 관련된 지원제도 및 정책을 매우 필요로 하지만, 입국 중기~후기 이주민의 경우에는 언어습득을 넘어 선주민과의 교류 및 지역사회 내 다양한 참여 등에 대한 수요와 선주민과의 관계 형성에 초점을 맞춰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주민 지원 표준조례안 지침에 따라 관련 조례인 ‘외국인주민지원 시책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조례안에 따라 조례를 마련한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주민 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을 조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실제로 조례상에 나타나있는 시책들을 실제로 집행하고 있지 않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이주민의 시정참여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서야 이루어지고 있는데 박세훈(2011)은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 중 광역시를 제외하고 이주민 인구 비중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도시를 ‘외국인 집거도시’로 설정하여 11개 도시의 외국인정책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 집거도시’의 외국인 정책이 가장 활발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의 외국인정책에 머물러 있음을 밝혀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과 반대로 중앙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 정책은 시혜적이며 시책에서 언급되고 있는 활자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이주민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이주민의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관련 제도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여 사회연결망을 좀 더 촘촘히 하는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일례로 서울시의 경우, 선주민들과 이주민들이 연계될 수 있는 ‘다문화마을공동체’를 시작으로 이주민의 사회참여와 시정참여를 이끌어냈다. 선주민과 이주민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사랑방을 설치하여

서로 소통하고 각 지역 혹은 마을의 현안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선주민과 이주민 간의 친밀도 제고를 위한 자조모임, 부정적 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교류, 마을 공동의 문제 발굴 등 함께 해결을 모색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주민의 시정참여와 선주민과의 교류 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서울시 보도자료, 2013.05.07.).

이처럼 이주민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 중 자조모임 혹은 네트워크는 시정참여뿐만 아니라 선주민과의 다양한 교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강점을 가지므로, 수원시 이주민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제3장

# 이주민 현황 및 정책

제1절 이주민 현황

제2절 이주민 정책

제3절 소결



# 제3장 이주민 현황 및 정책

## 제1절 이주민 현황

### 1. 경기도 이주민 현황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주민은 총 714,497명이다. 이 중 65,885명(9.2%)이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이주민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 3-1>과 같다. 2019년 67,073명, 2020년 66,668명, 2021년 65,885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수원시 이주민 수가 감소하였다.

표 3-1 | 연도별 이주민 현황

(단위: 명)

구분	2019			2020			2021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경기도	720,090	403,280	316,810	719,900	390,068	327,832	714,497	382,426	332,071
수원시	67,073	34,055	33,018	66,668	32,942	33,726	65,885	32,435	33,450
성남시	33,047	15,887	17,160	31,893	14,687	17,206	30,535	13,969	16,566
의정부시	9,762	4,283	5,479	9,845	4,193	5,652	10,011	4,224	5,787
안양시	14,617	6,855	7,762	14,352	6,531	7,821	14,025	6,382	7,643
부천시	46,807	22,498	24,309	51,369	24,367	27,002	53,080	24,982	28,098
광명시	11,775	5,507	6,268	10,322	4,690	5,632	9,102	4,116	4,986
평택시	39,835	22,169	17,666	39,760	21,169	18,591	41,240	21,846	19,394
동두천시	5,784	3,024	2,760	5,597	2,851	2,746	5,424	2,779	2,645
안산시	92,787	50,962	41,825	93,792	50,353	43,439	94,941	50,446	44,495
고양시	25,175	12,415	12,760	24,794	11,557	13,237	24,506	11,272	13,234
과천시	582	298	284	564	265	299	591	288	303
구리시	3,071	1,386	1,685	3,077	1,320	1,757	3,071	1,329	1,742
남양주시	15,227	8,224	7,003	15,245	7,867	7,378	15,370	7,658	7,712
오산시	18,605	9,279	9,326	19,918	9,762	10,156	20,157	9,892	10,265

시흥시	59,634	33,362	26,272	62,587	34,249	28,338	64,570	35,3454	29,225
군포시	13,019	6,400	6,619	13,156	6,266	6,890	12,713	6,002	6,711
의왕시	2,581	1,264	1,317	2,433	1,113	1,320	2,364	1,064	1,300
하남시	5,092	2,630	2,462	5,124	2,476	2,648	5,291	2,495	2,856
용인시	34,101	18,658	15,443	32,051	17,034	15,017	31,138	16,058	16,080
파주시	20,396	13,082	7,314	19,556	12,117	7,439	19,201	11,542	7,659
이천시	12,866	7,336	5,530	12,295	6,768	5,527	12,061	6,484	5,577
안성시	19,999	12,247	7,752	19,947	11,892	8,055	20,461	11,981	8,480
김포시	32,522	23,286	9,236	32,317	22,373	9,944	31,651	21,241	10,410
화성시	65,040	43,305	21,735	63,718	41,381	22,337	62,542	39,660	22,882
광주시	22,641	14,093	8,548	22,006	13,261	8,745	20,555	12,006	8,549
양주시	13,105	8,711	4,394	12,411	8,013	4,398	12,329	7,765	4,564
포천시	21,113	14,867	6,246	19,696	13,845	5,851	1,8533	12,692	5,841
여주시	6,323	3,589	2,734	6,183	3,438	2,745	5,959	3,263	2,696
연천군	1,893	1,198	695	1,753	1,071	682	1,655	979	676
가평군	2,315	974	1,341	2,280	909	1,371	2,356	963	1,393
양평군	3,303	1,436	1,867	3,191	1,308	1,883	3,180	1,328	1,852

자료: 행정안전부(2019-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주1: 2021.11.1. 기준

이주민의 체류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 <표 3-2>와 같다. 이주민은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타외국인, 이주민 자녀(출생)로 구분된다. 먼저 경기도의 유형별 이주민을 살펴보면 외국인근로자 199,634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타외국인 183,232명, 외국국적동포 124,647명, 이주민 자녀(출생) 64,892명, 결혼이민자 52,697명, 유학생 21,200명 순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는 기타외국인이 17,036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외국국적동포 14,949명, 외국인근로자 14,052명, 이주민 자녀(출생) 4,864명, 결혼이민자 4,611명, 유학생 4,499명 순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의 경우에는 외국국적동포의 수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정책대안이 필요해 보이며, 구체적인 유형별 이주민 현황은 다음 <표 3-2>와 같다.

표 3-2 | 유형별 이주민 현황

(단위: 명)

구분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타외국인	이주민 자녀(출생)
경기도	199,634	52,697	21,200	124,647	183,232	64,892
수원시	14,052	4,611	4,499	14,949	17,036	4,864
성남시	6,571	2,860	1,732	7,041	6,602	3,340
의정부시	866	1,163	1,129	1,028	2,275	1,659
안양시	2,510	1,348	430	3,236	3,218	1,737
부천시	8,568	4,102	932	11,671	13,120	4,358
광명시	2,241	1,086	940	2,966	1,921	1,325
평택시	10,098	2,917	1,431	7,019	11,520	3,551
동두천시	1,109	495	104	427	2,246	710
안산시	25,334	5,528	1,136	21,556	26,909	5,554
고양시	4,698	2,779	453	3,935	5,812	3,476
과천시	47	73	-	138	76	107
구리시	473	456	32	311	635	582
남양주시	3,790	1,770	475	1,080	3,273	2,842
오산시	3,587	1,503	298	5,363	4,739	1,698
시흥시	16,590	4,012	403	14,309	16,349	4,290
군포시	2,650	1,140	188	3,060	3,141	1,157
의왕시	440	314	60	320	449	476
하남시	1,146	601	28	573	952	957
용인시	7,982	2,681	3,680	4,677	6,805	3,548
파주시	7,224	1,565	94	1,484	5,123	2,309
이천시	5,209	781	75	1,002	3,333	1,175
안성시	6,839	964	828	3,574	5,453	1,297
김포시	14,230	1,810	304	6,7637	8,196	2,399
화성시	27,310	3,641	923	6,787	16,682	4,586
광주시	8,273	1,478	524	2,107	4,770	2,180
양주시	4,463	865	468	815	3,510	1,384
포천시	9,334	869	502	1,155	5,854	1,284
여주시	2,304	402	322	440	1,591	599
연천군	552	134	-	80	517	319
가평군	265	416	60	203	462	528
양평군	879	333	48	300	663	601

자료: 행정안전부(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이주민의 국적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 <표 3-3>과 같다. 동북아시아에 속한 국가는 중국, 대만, 일본, 몽골이다. 동남아시아에 속한 국가는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라오스, 동티모르,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서남아시아에 속한 국가는 스리랑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기타이다. 중앙아시아에 속한 국가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북미는 미국과 캐나다이고, 유럽에 속한 국가는 러시아, 러시아(한국계), 영국, 기타이다.

이외의 오세아니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이 있지만 수원시 이주민 유형의 경우에는 동북아시아(41,704명), 동남아시아(6,512명), 서남아시아(1,944명), 북미(1,156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 | 국적별 이주민 현황

(단위: 명)

구분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시아 (기타)	북미	유럽
경기도	316,434	143,785	31,401	30,607	1,022	15,279	19,004
수원시	41,704	6,512	1,944	756	106	1,156	814
성남시	16,094	2,710	403	499	45	2,482	453
의정부시	3,555	1,779	309	179	8	415	155
안양시	7,689	1,537	99	94	9	402	173
부천시	33,819	4,282	372	284	21	411	247
광명시	5,312	752	53	47	-	169	59
평택시	16,324	8,577	1,578	2,897	95	1,438	1,313
동두천시	950	1,439	392	150	112	184	88
안산시	50,062	8,206	1,889	10,885	46	252	7,260
고양시	9,370	4,257	547	360	77	1,408	463
과천시	102	42	11	12	-	104	26
구리시	996	667	27	33	5	159	50
남양주시	3,141	4,499	1,028	278	19	567	344
오산시	13,481	1,672	222	305	-	115	156
시흥시	40,667	9,371	1,596	861	48	201	388
군포시	7,893	1,495	105	63	-	145	61
의왕시	660	520	62	19	-	140	33
하남시	1,329	1,197	141	74	-	373	103

용인시	11,544	6,526	1,445	775	34	2,360	707
파주시	4,239	6,726	1,817	592	39	357	260
이천시	2,834	5,400	781	552	12	108	144
안성시	5,866	5,463	1,349	3,065	28	182	1,821
김포시	8,577	11,402	2,924	1,437	54	472	693
화성시	17,257	22,793	4,944	4,205	106	729	2,249
광주시	2,657	7,042	1,518	891	23	311	412
양주시	2,042	4,883	1,814	366	59	159	98
포천시	2,673	9,046	3,221	613	24	55	219
여주시	1,031	3,041	305	196	28	62	113
연천군	204	521	313	25	6	18	13
가평군	747	301	68	68	-	169	46
양평군	615	1,126	124	26	-	176	43

자료: 행정안전부(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 2. 수원시 이주민 현황

### 1) 수원시 외국인근로자 현황

수원시 외국인근로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3-4>와 같다. 2019년 14,052명이었던 외국인근로자 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11,714명으로 감소하였고, 이듬해인 2021년에는 9,151명을 기록하면서 1만 명대 아래로 떨어졌다. 행정구역별로 2021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팔달구가 4,070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권선구 2,468명, 영통구 1,365명, 장안구 1,248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4 | 외국인근로자 현황

(단위: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수원시	14,052	11,714	9,151
장안구	1,929	1,571	1,248
권선구	4,127	3,340	2,468
팔달구	6,306	5,240	4,070
영통구	1,690	1,563	1,365

자료: 행정안전부(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수원시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1년 미만인 경우가 3,102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2~3년 미만 2,149명, 3~4년 미만 1,343명, 1~2년 미만 1,092명, 5~10년 미만 748명, 4~5년 미만 457명, 10년 이상 260명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의 경우에는 대체로 장기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수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참여에 대한 정책대안이 필요해 보이며, 구체적인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별 현황은 다음 <표 3-5>와 같다.

표 3-5 |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별 현황

(단위: 명)

구분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합계	9,151	1,248	2,468	4,070	1,365
1년 미만	3,102	463	833	1,493	313
1~2년 미만	1,092	141	279	522	150
2~3년 미만	2,149	292	645	958	254
3~4년 미만	1,343	162	383	622	176
4~5년 미만	457	63	143	156	95
5~10년 미만	748	93	130	272	253
10년 이상	260	34	55	47	124

자료: 행정안전부(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수원시 외국인근로자 국적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중국(한국계)이 7,243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기타 318명, 미국 228명, 네팔 20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외국인근로자 국적별 현황은 다음 <표 3-6>과 같다.

표 3-6 | 외국인근로자 국적별 현황

(단위: 명)

구분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중국	207	43	25	59	80
중국(한국계)	7,243	977	2,076	3,695	495
대만	6	-	-	-	-
일본	74	5	-	-	61
몽골	18	-	13	-	-
베트남	185	27	97	8	53
필리핀	80	-	48	9	37

태국	85	-	48	9	24
인도네시아	10	-	-	-	-
캄보디아	110	-	27	39	42
미얀마	51	-	37	-	10
스리랑카	22	-	11	7	-
파키스탄	34	16	-	8	8
방글라데시	39	-	6	-	29
네팔	207	-	21	124	58
우즈베키스탄	29	6	10	8	5
카자흐스탄	18	-	5	7	-
키르기스탄	7	-	-	-	-
미국	228	22	20	41	145
캐나다	34	5	5	-	21
러시아	102	11	9	15	67
영국	51	6	5	9	31
오세아니아	17	-	-	-	13
중남미	11	8	-	-	-
아프리카	43	10	5	9	19
기타	318	89	7	18	190

자료: 행정안전부(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 2) 수원시 결혼이민자 현황

수원시 결혼이민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9년 4,611명, 2020년 4,394명, 2021년 4,434명으로 대체로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행정구역별로 살펴보면 권선구가 1,548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 팔달구가 1,208명, 영통구 854명, 장안구 824명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혼이민자 현황은 다음 <표 3-7>과 같다.

표 3-7 | 결혼이민자 현황

(단위: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수원시	4,611	4,394	4,434
장안구	834	803	824
권선구	1,672	1,582	1,548
팔달구	1,337	1,142	1,208
영통구	768	867	854

자료: 행정안전부(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수원시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10년 이상 1,973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5~10년 미만 1,261명, 2~3년 미만 284명, 3~4년 미만 269명, 4~5년 미만 259명, 1~2년 미만 218명, 1년 미만 170명 순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의 경우에는 결혼이민자 체류기간이 10년 이상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정책대안이 필요해 보이며, 구체적인 결혼이민자 체류기간별 현황은 다음 <표 3-8>과 같다.

표 3-8 | 결혼이민자 체류기간별 현황

(단위: 명)

구분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합계	4,434	824	1,548	1,208	854
1년 미만	170	27	55	43	45
1~2년 미만	218	40	77	52	49
2~3년 미만	284	51	102	55	76
3~4년 미만	269	51	105	58	55
4~5년 미만	259	58	95	65	41
5~10년 미만	1,261	222	445	353	241
10년 이상	1,973	375	669	582	347

자료: 행정안전부(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수원시 결혼이민자의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한국계) 1,385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베트남 571명, 일본 276명, 필리핀 174명, 미국 26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혼이민자의 국적별 현황은 다음 <표 3-9>와 같다.

표 3-9 | 결혼이민자 국적별 현황

(단위: 명)

구분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중국	1,111	199	377	355	180
중국(한국계)	1,385	251	494	504	136
대만	67	13	18	10	26
일본	276	51	84	40	101
몽골	54	10	31	10	-
베트남	571	126	246	130	69
필리핀	174	48	65	35	26
태국	117	28	48	17	24

인도네시아	18	5	7	-	5
캄보디아	60	5	30	21	-
미얀마	8	-	-	-	-
말레이시아	6	-	-	-	-
라오스	5	-	-	-	-
파키스탄	17	-	7	-	5
방글라데시	8	-	6	-	-
네팔	24	-	5	16	-
우즈베키스탄	43	5	17	9	12
키르기스탄	13	-	-	-	5
미국	164	27	25	18	94
캐나다	79	7	20	5	47
러시아	79	7	20	5	47
영국	34	7	5	-	18
오세아니아	38	-	10	-	21
중남미	26	-	9	-	11
아프리카	20	-	5	-	10
기타	77	13	14	10	28

자료: 행정안전부(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 3) 수원시 유학생 현황

수원시 유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4,499명, 2020년 4,134명, 2021년 4,478명으로 잠시 감소하였다가 대체로 4천 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으로 행정구역별로 살펴보면 영통구 2,115명, 장안구 1,893명, 팔달구 316명, 권선구 154명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유학생 현황은 다음 <표 3-10>과 같다.

표 3-10 | 유학생 현황

(단위: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수원시	4,499	4,134	4,478
장안구	2,045	1,790	1,893
권선구	117	130	154
팔달구	336	322	316
영통구	2,001	1,892	2,115

자료: 행정안전부(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수원시 유학생 체류기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이주민의 체류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1년 미만 1,166명, 3~4년 미만 906명, 2~3년 미만 866명, 1~2년 미만 609명, 4~5년 미만 460명, 5~10년 미만 438명, 10년 이상 33명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유형별 체류기간별 현황은 다음 <표 3-11>과 같다.

표 3-11 | 유학생 체류기간별 현황

(단위: 명)

구분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합계	4,478	1,893	154	316	2,115
1년 미만	1,166	444	33	57	632
1~2년 미만	609	181	15	51	362
2~3년 미만	866	371	28	63	404
3~4년 미만	906	503	29	42	332
4~5년 미만	460	221	28	38	173
5~10년 미만	438	164	17	57	200
10년 이상	33	9	-	8	12

자료: 행정안전부(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수원시 유학생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베트남 2,162명으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중국 819명, 기타 187명, 우즈베키스탄 174명, 파키스탄 156명, 몽골 11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유학생 국적별 현황은 다음 <표 3-12>와 같다.

표 3-12 | 유학생 국적별 현황

(단위: 명)

구분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중국	819	334	16	66	403
중국(한국계)	20	5	6	-	6
대만	7	-	-	-	5
일본	28	-	8	-	16
몽골	115	24	23	24	44
베트남	2,162	1,070	52	91	949
필리핀	14	6	-	-	5
태국	17	10	-	-	5

인도네시아	52	33	-	-	17
캄보디아	10	-	-	-	-
미얀마	27	6	-	12	7
말레이시아	71	57	-	-	12
스리랑카	7	5	-	-	-
파키스탄	156	90	-	5	57
방글라데시	65	7	-	5	53
네팔	111	8	-	34	67
우즈베키스탄	174	22	19	13	120
키르기스탄	6	-	-	-	-
미국	27	-	-	-	19
러시아	35	8	-	-	23
오세아니아					
중남미	43	20	-	-	22
아프리카	148	47	-	27	71
기타	187	43	6	14	119

자료: 행정안전부(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 3. 수원시 이주민 집중거주지 현황

수원시 이주민 집중거주지 현황은 다음 <표 3-13>과 같으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2021년 11월 1일 기준으로 수원시 전체 이주민 65,885명 중 외국국적 동포가 18,886명으로 비율이 2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별로 살펴보면 팔달구 23,049명, 권선구 19,312명, 장안구 12,234명, 영통구 11,290명 순이며, 모든 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외는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타외국인,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외국인 주민 자녀(출생) 순으로 나타났다.

동별로 살펴보면 외국인 근로자(4,834명), 결혼이민자(239명), 외국국적동포(2,113명), 기타외국인(1,367명),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478명)는 고등동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학생(1,157명)은 울천동, 외국인주민 자녀(출생, 245명)는 서둔동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3-13>과 같다.

표 3-13 | 이주민 집중거주지 현황

(단위: 명)

구분	이주민 수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 국적동포	기타외국인	한국국적을 취득한자	외국인주민 자녀(출생)
<b>수원시</b>	65,885	9,151	4,434	4,478	18,886	17,036	6,616	5,284
<b>장안구</b>	12,234	9,819	824	1,893	2,732	3,122	1,266	1,149
율천동	2,934	2,659	101	1,157	275	889	128	147
영화동	3,476	2,934	182	6	1,303	879	378	164
연무동	1,710	1,505	91	655	212	452	115	90
<b>권선구</b>	19,312	14,918	1,548	154	6,124	4,624	2,446	1,948
세류1동	2,196	1,895	118	13	853	588	217	84
세류2동	4,610	3,958	220	12	1,817	1,184	461	191
세류3동	2,526	2,133	144	11	944	677	253	140
평동	1,712	1,230	178	15	317	401	243	239
서둔동	2,093	1,562	203	20	627	491	286	245
구운동	1,187	927	85	13	419	261	129	131
권선1동	1,237	966	90	19	423	298	157	114
곡선동	1,052	842	101	35	339	238	113	97
<b>팔달구</b>	23,049	19,756	1,208	316	8,341	5,821	2,201	1,092
지동	2,247	1,959	102	13	891	509	203	85
우만1동	1,193	887	129	42	263	299	169	137
인계동	2,349	379	156	40	697	625	209	172
매교동	1,550	1,887	82	5	568	460	172	59
매산동	4,193	1,319	149	65	1,730	1005	246	82
고등동	5,492	4,834	239	28	2,113	1,367	478	180
화서1동	3,362	2,778	199	18	1,219	836	373	211
행궁동	1,724	1,527	81	8	690	430	148	49
<b>영통구</b>	11,290	9,492	854	2,115	1,689	3,469	703	1,095
매탄1동	1,757	1,634	47	648	262	500	66	57
매탄3동	1,055	873	73	71	171	382	82	100
원천동	1,881	1,493	88	549	158	496	74	114
영통3동	1,881	1,758	68	632	171	631	53	70

자료: 행정안전부(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주: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는 주민등록인구대비 외국인주민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통상적으로 5%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최영미 외, 2015).

## 제2절 이주민 정책

### 1. 중앙정부 이주민 정책

이주민 정책이라 함은 한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해 일시적 혹은 영구적 사회 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국내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제반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정책이다. 세계적으로 우수인재 유치와 사회통합정책이 강화되고 국내적으로도 체류외국인 증가 및 저출생·고령화 및 인구 순유출 상황 지속, 다문화사회 본격 진입 등의 정책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적극적인 이주민 정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관련된 정책들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6년 5월 26일에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발족되었고, 2007년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에 의거하여 이주민(외국인) 정책에 관한 5개년 단위 국가계획인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 2008년 12월 17일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각 중앙부처의 외국인 기본 정책방향 및 범정부적 종합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김정순, 2009).

또한 국가의 이주민 정책을 결정짓는 주된 요인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가 엇갈린다. 국제인권레짐의 확산으로 이주민에 대한 우호적 통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Bauböck, 1994; Jacobson, 1996; Soysal, 1994). 국가의 역사적 행로와 민족의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입장(Brubaker, 1992)와 이주민을 둘러싼 이해집단의 활약에 따라 달라진다는 입장(Freeman, 1995; Joppke, 1998) 등 한 국가의 이주민 정책은 다양한 국내·외적인 요인에 따라 변화한다(장주영 외, 2020).

한국의 이주민 유입과정 및 정부의 정책기조는 다음과 같다. 먼저 1964년 「출입국관리법」이 제정되어 한국 정부는 대외개방 정책을 유지한 후, 1973년 대외적으로 모든 나라에 문호를 개방할 것임을 당시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선언하였다. 이후 1980년대 들어서 산업구조가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국내 노동자의 임금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인력난이 심화되어 인력난 해소를 위해 대거 유입되기 시작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결혼이민자들이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는 소련과 중국 등의 국가와 수교를 맺으면서 1991년 ‘산업연수생제’를 기반으로 외국인력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2000년대에는 ‘다문화 시대’의 사회통합 정책이 정부의 정책기조가 되었다(최영미 외, 201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5년마다 관계부처의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현재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2018년 2월 12일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확정되었다. 외국인정책위원회 추진구조는 다음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 외국인 정책 위원회



자료: 행정안전부(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관련 법령으로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19개 기관, 15부, 1위원회, 3청)과 지방자치단체(17개 광역자치단체)이며, 주요 정책대상은 이주민(체류 외국인) 약 197만 명이며, 단기체류(친지방문, 관광, 투자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 90일 이하 단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와 장기체류(취업, 유학 등 90일을 초과하여 장기 거주하거나 결혼이민, 영주 등 국내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로 분류된다. 여기서 국적취득자는 약 26만 명으로 추정된다(2022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구체적인 제 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비전, 핵심가치,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는 다음 <표 3-14>와 같다.

표 3-14 | 2022년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구분	내용				
비전	국민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				
핵심가치	상생	통합	안전	인권	협력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 있는 개방		① 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강화 ②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취업이민자 유치·활용 ③ 관광객 및 투자자 등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④ 유입 체계 고도화 및 체류·국적 제도 개선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① 이민단계별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② 이민배경 자녀 역량 강화 ③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지원 내실 ④ 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① 안전하고 신속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 ② 체류외국인 관리 체계 선진화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① 이민관련 국제협력 증진 ② 중앙부처·지자체·시민사회 협력강화 ③ 이민정책 및 연구기반 구축		

자료: 법무부(2022) 「2022년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표 3-14〉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방]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 있는 개방으로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내·외국인 상생·공존시대에 부응하는 적극적 외국인 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② 우수인재·투자자·취업이민자 유치 및 성장지원 강화,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지원이다.

다음으로 [통합]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로 추진방향은 ① 이민단계별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이민자 복지지원 내실화를 통해 이민자의 자립 및 참여 확대이다.

[안전]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로 추진방향은 ① 선진기술을 이용한 안전하고 신속한 국경관리 및 국민과 외국인 모두 안전한 체류환경조성이다. [인권]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로 추진방향은 ① 이민자 차별방지 및 대상별 체계적 인권보호 제도, 다양한 문화 유입에 따른 문화 다양성 증진 및 이해 제고이다.

[협력]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로 추진방향은 ① 이민 관련 국제협력 증진 및 중앙부처·시민사회 협력 강화, 이민정책 추진 관련 인프라 구축이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중앙정부의 이주민 관련 정책 추진방향은 다음 〈표 3-15〉와 같다.

표 3-15 | 주요 중앙정부의 이주민 관련 정책 추진방향

구분	내용
교육부	- 우수 유학생 유치 확대 및 정착지원,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 내실화 - 교원의 다문화 교육 역량, 세계시민 교육역량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해외 연구자 대상 국내 연구 환경 정보제공 및 정주지원 강화로 글로벌 연구 환경 조성 - 해외 우수 연구자 초청·유치를 지원하여 우수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외교부	- 국제 인권규범 이행 강화, 난민 관련 국제협력 강화 - 개발도상국 인재 양성을 위한 연수 사업 운영
법무부	- 외국인 관광객 및 투자자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지원 - 외국인의 자립강화와 참여를 통한 사회통합 강화 - 안전하고 신속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 및 체류외국인 관리 체계 선진화 - 구체적 인권보호 제도 마련 및 인권보호 관련 인프라 확충
행정안전부	- 지자체 외국인주민 관련 정책 추진 지원 강화 - 외국인주민과 지역주민이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지속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관광 홍보 마케팅 강화 및 외래객 유치여건 개선을 통한 관광시장 다변화 추진 - 관광서비스 확충 및 관광업계 성장을 위한 지원 강화 - 사회 구성원 내 갈등관리 및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 영농 후계 인력으로 육성 및 지역통합을 위한 결혼이민여성 역량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 기업수요 맞춤형 인재유치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 제고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외국인 유학생 채용수요 대응을 위한 유학생 채용박람회의 융복합화
보건복지부	- 디지털 헬스 케어 등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활용한 유치 기회 확대 추진 - 저소득 외국인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및 외국인근로자 의료 지속 지원
고용노동부	- 경기 전망, 인력 부족률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외국인력 도입 규모 결정 - 외국인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지속, 외국인노동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 방문지원 확대 등 단계별 귀국지원 강화 및 불법체류 방지
여성가족부	-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내실화 및 자녀 성장지원 - 국제결혼 중개 건전화 및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국토교통부	- 환승 체류시간 및 환승객 편의향상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및 콘텐츠 개발 - 한국문화 체험 및 홍보의 장을 마련하여 재환승여객 및 인바운드 수요 증대 기여
해양수산부	- 코로나19 이후 크루즈 관광재개를 대비한 해외 Port Sales, 국제 크루즈 행사, 수요확대를 위한 크루즈 홍보를 온·오프라인 추진 - 테러 예방 등을 위한 항만보안 시설·장비 및 항만보안 인력 확보
중소벤처기업부	- 그랜드 챌린지 프로그램 고도화 및 국내 기업과 교류 활성화 - 중기부 창업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창업국가 위상에 조력
방송통신위원회	- 외국인 대상 방송통신서비스 피해예방 교육 지속 추진 - 외국인을 위한 방송통신서비스 지원 환경 개선
통계청	- 외국인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통계 생산 및 제공 강화 - 관계부처와의 협력강화를 통해 외국인 통계의 정확성·활용도 제고
경찰청	- 외국인 밀집지역 치안활동 강화 및 민관협력 활성화 - 외국인근로자 보호 활동
해양경찰청	- 안전한 해양국경 관리를 위한 외국인 범죄 단속 강화 - 대내·외 관계기관 공조 강화를 통한 외국인 범죄 적극 대응 -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현장 점검 활동 적극 협력

자료: 법무부(2022) 「2022년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 2. 수원시 이주민 사회참여 정책

수원시 이주민 및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례로는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이 있다. 먼저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배경으로 하여 제정되었으며, 제1조 목적에 따라 수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시장의 책무 및 거주외국인 지원 범위에 대한 사항,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거주외국인의 지위), 정책기반체계에 관한 사항(자문위원회), 사업 실행방안에 관한 사항(외국인 지원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 제5조, 제6조는 지원 대상에 관한 내용으로 지원 대상은 거주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그 밖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이 중에서 거주외국인의 지위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특별히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시장은 거주외국인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시의 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음으로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배경으로 하여 제정되었으며, 제1조 목적에 따라 수원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지역사회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하여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제시한 내용으로 시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적응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원시는 다문화정책과 내에 다문화정책팀, 다문화지원팀, 외국인지원팀으로 구분되어 이주민 관련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2023년 이주민 사회참여 관련 정책은 다음(표 3-16)과 같다.

표 3-16 | 2023년 수원시 이주민 사회참여 관련 정책

구분	정책 명
다문화정책팀	- 수원시 거주 이주민 시정참여 확대
	- 다문화 유관기관 소통 간담회
	- 다(多)어울림 공동체 공모사업
	- 외국인주민 다(多)누리꾼 운영
다문화지원팀	-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말하기 대회
	-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
	-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
	-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사업
외국인지원팀	- 재수원 외국인교민회 운영
	- 제15회 다문화 한가족 축제

자료: 수원시(2023) 「다문화정책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 1) 수원시 거주 이주민 시정참여 확대

수원시 거주 이주민 시정 참여를 확대하여 사회적 기여도에 상응하는 의견수렴 정책 지원으로 다(多) 가치 있는 다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양적 공론화는 공청회 및 토론회 등 참여기회 확대로 정책을 지원하고, 질적 내실화는 위원회 등 이주민 참여로 다문화 의견수렴 기능 강화한다.

대상은 수원시 시·구·동, 협업기관, 수원시 거주 이주민 등이 해당되며,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은 다음 <표 3-17>과 같다.

표 3-17 | 수원시 거주 이주민 시정참여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구분	주요 내용
2022년 10월	- 공청회·위원회 등 시정참여확대 수요조사 실시(시·구·동 대상)
2022년 하반기	- 이주민 유관기관 및 시민 대상 시정참여 의견수렴
	- 유관기관 소통간담회 개최, 민간네트워크 대상 시정참여 수요조사,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한 참여 활성화 독려
2023년 상반기	- 수원시 거주 이주민 시정참여 확대 기본계획 수립
	- 참여가능 위원회 구체화, 이주민 위원 매칭 등
수시	- 민간네트워크, 이주민 간담회 활용 소통채널 강화

자료: 수원시(2023) 「다문화정책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 2) 다문화 유관기관 소통 간담회

수원시 다문화 유관기관 및 단체 간담회를 통해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기관별 업무에 대한 상호토론 및 의견교환을 통해 효율적인 다문화 정책을 추진하고자 실시하고 있다. 참석기관은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수

원출입국외국인청 이민통합센터, 다누리콜센터 1577-1366 경기 수원센터, 수원이주민센터, 수원 YWCA, 情만천하 이주여성협회이다

주요 내용은 수원시 주요시책 공유 및 협조사항 안내와 건의사항, 주요 현안사항 토론 등이며, 추진계획은 격월 1회로 다문화 유관기관 소통 간담회 추진 계획 수립, 수원시 주요시책 및 각 기관별 홍보사항 취합, 찾아가는 다문화 유관기관 소통 간담회 개최, 다문화 유관기관 소통 간담회 개최 결과보고 등이다.

### 3) 외국인주민 다(多)누리꾼 운영

수원시민과 외국인주민이 함께 하는 다문화 공감정책 추진을 위하여 국가별 이주민으로 구성된 홍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수원 시정 홍보 및 의견수렴으로 다누리꾼을 운영하고 있다. 다(多)누리꾼은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10개국 5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3-18〉 참조).

표 3-18 | 외국인주민 다(多)누리꾼 현황

(단위: 명)

구분	인원	구분	인원
네팔	1	일본	2
몽골	2	호주	19
미얀마	1	태국	1
베트남	19	키르기스스탄	4
우즈베키스탄	1	필리핀	5

자료: 수원시(2023) 「다문화정책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다(多)누리꾼의 활동분야는 온라인 활동(온라인 커뮤니티: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각 나라별 SNS 등을 통한 수원시정 홍보)과 오프라인 활동(정례회의를 통한 홍보, 아이디어 제안, 의견수렴 등)으로 구분되며, 자원봉사로 인정된다.

### 4)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말하기 대회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말하기 대회를 통해 한국어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 고취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과 관심을 갖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책 대상은 수원시민 및 외국인주민 등으로 말하기 경연대회 뿐만 아니라 문화공연 및 시상식 등도 진행된다.

2022년 제8회 수원시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말하기 대회는 총 400여명(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다문화가족 등)이 참여하여 내가 ~라면, 세계시민의 역할, 이주민 인식개선을 주제로 실시되었다.

## 5)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

동아리모임 지원을 통해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의 기회와 한국생활 노하우 공유 등 다문화가족에게 정보 교류의 장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조기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

지원 분야는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교육활동, 다문화 인식개선 활동, 악기연주 및 공연준비, 한식 및 각종 체험활동, 결혼이민자 남편 모임 등이다. 2022년의 추진실적은 다음 <표 3-19>와 같다.

표 3-19 | 다문화가족 동아리 모임 현황

구분	동아리 명	주요 내용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알로하 우쿨렐레	- 우쿨렐레 연주 연습 및 협연
	엄마들의 맛있는 밥상	- 다양한 나라의 음식 및 한식요리 만들기
	홈아트 힐링나눔 '해피앤드, 해피하트'	- 홈데코 활동 및 목공체험 등
	Healthy & Beauty	- 다양한 뷰티체험활동 및 건강관리 활동
수원이주민센터	다름아름 이주여성 강사모임	- 이주여성강사 역량 강화 활동
	아우름 공동체	- 오토캐드 기본과정 학습

자료: 수원시(2023) 「다문화정책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 6)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적응과 생활편의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포터즈의 자격기준은 결혼이민자로 입국한지 3년 이상, 한국어 중급수준인데 수원시 내 다문화가족이며, 임기는 1년이다.

주요 내용은 신규 결혼이민자 센터 등록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연계, 어려운 다문화가정 생활 지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SNS(비대면) 활동 등이며, 2022년의 추진실적은 서포터즈 인원 총 10명에 활동실적 609건, 1,085시간이다.

## 7)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 사업

결혼이민자가 지역사회 다문화 인식개선 및 상호 문화이해교육에 대한 활동가로 참여하여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센터 등 다양한 지역공동체를 찾아가는 다문화 친화 활동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문화 체험교육 및 인식개선 등 교육 희망기관을 대상으로 결혼이민자가 다문화 활동가로 참여하여 찾아가는 다문화 친화활동 실시이며, 2022년 추진실적은 다이음 강사 2명(중국, 베트남)이 새수원지역아동센터 등 25개소를 91회/1,2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8) 재수원 외국인 교민회 운영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교민회 활동 및 운영 지원으로 다문화와 한국문화의 만남과 소통을 통해 다문화 정책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 대상은 13개국(중국, 필리핀, 몽골, 러시아,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일본, 인도네시아, 귀한동포, 네팔, 인도, 미얀마) 14개팀 교민회 1,331명이다.

대부분 교민회 자조모임 형태로 정보공유, 간담회 및 세미나, 여름 수련회 등을 진행하고, 교민회별 고국의 전통명절과 기념일 축제행사 등을 진행하여 문화 소통을 진행한다.

## 9) 제15회 다문화 한가족 축제

외국인 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며 외국인 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글로벌 휴먼시티 수원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축제의 대상은 외국인 주민 및 수원시민이며, 수원 제1야외음악당에서 진행되며, 외국인 관련기관 및 단체의 협조 관련회의를 통한 홍보로 세계민속의상 패션쇼, 다문화 특별 퍼포먼스, 축하공연, 부스 운영 등으로 구성된다.

2022년 제14회 다문화 한가족 축제는 수원시청 대강당, 유튜브, ZOOM 등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되어 4,418명이 참여하였다.

### 제3절 소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총 720,090명이다. 이 중 67,073명(9.3%)이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 이주민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수원시 이주민 수가 감소하였다. 다만 수원시의 경우에는 다른 타 시·도에 비해 외국국적동포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이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대안이 필요해 보인다.

이주민 정책은 한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해 일시적 혹은 영구적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국내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제반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정책이므로 본격적으로 다문화사회에 진입한 한국의 상황과 정책 환경의 급변에 따라 적극적인 이주민 정책에 대한 요구와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중앙정부에서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5년마다 관계부처의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2018년 2월 12일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확정되었다. 비전은 ‘국민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이며, 핵심가치로는 상생, 통합, 안전, 인권, 협력이다.

반면 수원시에서는 수원시 이주민 및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과 관련 조례인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이 있으며,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배경으로 제정되었다. 관련된 조례들을 통해 수원시는 2019년 「외국인·다문화정책 종합계획」 수립하여 ‘외국인·다문화가족이 함께 누리는 포용도시 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4대 정책목표는 함께하는 건전한 다문화도시 조성, 이주배경 청소년 역량 강화,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모두가 행복한 포용사회 등이다.

특히 이주민의 사회참여와 관련하여 수원시 이주민 시정참여 확대를 민선 8기 공약으로 내세워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다문화 유관기관 소통 간담회를 통해 각 기관별 업무에 대한 상호의견 교환 및 효율적인 다문화 정책 추진을 위해 논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주민 다(多)누리꾼 운영 및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수원시 내 이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및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한국사회 내에서 이주민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여전히 시혜적인 접근을 통해 이주민 정책이 활자로만 존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수원시는 이를 개선하여 실질적으로 이주민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선주민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회참여의 기회를 점차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필요로 한다. 이주민이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책으로 뒷받침하고 실질적으로 선주민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여 그들에게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 준다면, 단순히 결혼이민여성 혹은 외국국적 동포,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등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수원시 지역사회 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 제4장

# 이주민 조사 결과

제1절 심층면접조사 개요

제2절 심층면접조사 결과

제3절 소결



## 제4장 이주민 조사 결과

### 제1절 심층면접조사 개요

본 연구는 이주민과 유관기관 실무자 대상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수원시 이주민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을 탐색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그들의 경험과 심층적인 의견을 듣고자 심층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조사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특정 주제에 관해 자신들의 시각과 느낌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Krueger & Casey, 2009), 집단의 역동성과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양적 연구에서 밝히기 어려운 심층적인 요소들을 청취함으로써, 양적 결과의 해석을 촉진하고, 구조화된 설문조사에서 획득된 결과들의 깊은 이해를 제공할 수 있다(Stewart & Shamdasani, 2015). 따라서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이주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이고 실천적으로 무엇을 고려하고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 1. 이주민 대상 심층면접조사

재수원교민회, 서포터즈, 다누리꾼,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3년 3월 15일~4월 21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총 4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라운드 테이블 방식을 통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심층면접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4-1>과 같다.

표 4-1 | 이주민 대상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특성

소속	사례	출신국가	이주연도	비고
재수원교민회	사례 1	중국	1992년	중국교민회 회장
	사례 2	베트남	1993년	베트남교민회 회장
	사례 3	베트남	2007년	베트남교민회 부회장
	사례 4	몽골	2000년	몽골교민회 회장
	사례 5	일본	1990년	일본교민회 회장
	사례 6	귀한동포	2005년	귀한동포교민회 회장
	사례 7	네팔	2005년	네팔교민회 회장
	사례 8	미얀마	2009년	미얀마교민회 회장
	사례 9	필리핀	2013년	필리핀교민회 회장
	사례 10	캄보디아	2011년	캄보디아교민회 부회장

	사례 11	인도	2006년	인도교민회 회장	
	사례 13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교민회 회장	
	사례 14	방글라데시	-	방글라데시교민회 회장	
서포터즈	사례 15	태국	-	-	
	사례 16	중국	2002년 말	봉사활동 개념으로 적십자 활동	
	사례 17	중국	2004년	이주 전 무역회사 근무	
	사례 18	중국	2004년 말	-	
	사례 19	베트남	2005년	-	
	사례 20	베트남	2007년	-	
	사례 21	태국	2017년	-	
	사례 22	우즈베키스탄	2017년	-	
	사례 23	필리핀	2019년	-	
	사례 24	러시아	2019년 말	-	
	다누리꾼	사례 25	중국	2000년	공공기관 등에서 통·번역사로 활동 중
		사례 26	중국	2002년	이주 전 중국회사의 한국지사 근무
사례 27		중국	2004년	-	
사례 28		중국동포	2014년	-	
사례 29		중국동포	2017년	-	
사례 30		베트남	2008년	-	
사례 31		베트남	2009년	-	
사례 32		베트남	2010년	-	
사례 33		베트남	2010년	-	
사례 34		베트남	2012년	-	
사례 35		네팔	-	-	
사례 36		필리핀	-	-	
사례 37		필리핀	-	-	
종사자	사례 38	중국	2013년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근무	
	사례 39	베트남	2008년		
	사례 40	베트남	2020년		

## 2. 이주민 유관기관 실무자 대상 심층면접조사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주민분과의 위원 및 수원시 관내 이주민 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3년 4월 20일~4월 21일까지 총 2회에 걸쳐 총 11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심층면접조사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4-2>와 같다.

표 4-2 | 현장 실무자 대상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특성

소속	사례	소속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주민 분과위원	사례 1	매산지역아동센터
	사례 2	수원시중국동포협회
	사례 3	권선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례 4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례 5	수원교육지원청
	사례 6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유관기관 관계자	사례 7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사례 8	수원시출입국·외국인청
	사례 9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사례 10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례 11	수원시 YWCA

## 제2절 심층면접조사 결과

수원시 이주민과 이주민 유관기관 실무자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접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 4-3>과 같다.

이주민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에 해당하는 인구학적 특징, 가족관계, 이주 이전의 경험 등과 사회참여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해당하는 현재 하고 있는 활동, 참여 경로, 참여 후 달라진 점 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주민 유관기관 실무자 대상으로는 일반적 특성,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에 해당하는 사회참여 내용과 유형 및 범위, 지방자치단체 활동의 참여 주체와 참여 경로 등을 확인하였다.

표 4-3 | 심층면접조사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이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적 특성(인구학적 특징, 가족관계, 이주 이전의 경험, 한국으로 이주하게 된 계기, 한국어 능력수준 등)</li> <li>• 사회참여 현황 및 활성화 방안(삶의 만족도, 현재 하고 있는 활동, 참여 경로, 참여 후 달라진 점, 참여 시 어려운 점, 선주민과의 갈등 여부, 향후 원하는 사회참여 내용과 유형 등)</li> <li>• 기타의견</li> </ul>
유관기관 실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적 특성(인구학적 특징)</li> <li>•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사회참여 내용과 유형 및 범위, 지방자치단체 활동의 참여 주체와 참여 경로, 이외 사회참여의 어려운 점 및 활성화 방안 등)</li> <li>• 수원시의 지원 방안(지역사회와 연계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한마당 축제 이외 이주민과의 교류의 장 확대, 이주민 역량 강화, 이주민 이해교육 점검 및 확대 등)</li> </ul>

## 1. 이주민

### 1) 사회참여 현황

수원시 거주 이주민을 대상 심층면접조사에서 이주 전에는 사회참여 및 사회활동과 관련하여 잠시 활동하거나 활동한 적이 거의 없는 이주민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원시로 이주 후 국가별로 구성되어 있는 재수원교민회 및 다누리꾼, 다문화 서포터즈 등으로 사회참여를 하고 있는 이주민의 경우에는 가족 및 지인의 소개 등으로 관련 정보를 알게 되어 참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더 많은 이주민으로 하여금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홍보의 다양화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사회참여가 대체로 재수원교민회 활동, 봉사활동 등으로 한정되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선주민의 배타적인 시선과 분위기 등의 이유로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하고 그만두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이주민의 사회참여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선주민의 인식개선 교육 및 이주민의 사회참여 활동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주민R) 한국으로 이주 오기 전 본국에서는 직장생활을 은행에서 3~4년 정도 했으나 별도로 사회참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한국에서도 **이주민으로서 사회참여를 활발하게 하는데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여러 제약이 있어 별도의 사회참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이주민M) 한국으로 이주 오기 전 본국에서 NGO 활동을 잠깐 했습니다. 이후 한국에서는 별도의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한 적이 없지만, 만약 이주민 사회참여의 일환으로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면 한국 이주 후 처음 하는 사회참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주민A) 교민회 활동이 사회참여라고 한다면 현재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고, 한국으로 이주한 본국의 후배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맡게 되었으며, 다양한 문제에 접근할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합니다. 문제 발생 시 해결하는 과정 등을 통해 한국의 법과 제도 등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본국 후배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주민J)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한국에 정착하게 되었고 수원시에 살게 되었어요. 초기에는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이 있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그 다음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운영되는 봉사활동을 참여하려고 찾아갔었는데 일부 어르신들께서 이주민인 저를 불편해하시고, 한국에 왜 왔냐 혹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등의 말을 하셔서 중간에 그만하게 되었어요. 이렇듯 **이주민 입장에서 다양한 사회참여를 하기 까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고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집에서 혼자 있는 것 보다는 밖에 나가서 소통하는 게 좋아서 지금도 센터에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 2)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이주민 대상 심층면접조사에서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중 ‘위원회 참여’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어 의사소통 및 문화 차이 등의 이유로 위원회 참여 전 관련 내용에 대해 사전 공지 혹은 사전 교육을 받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이주노동자는 평일 오전 혹은 오후에 진행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직장에 있을 시간이라서 참여가 다소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위원회 시간을 평일 저녁 혹은 주말에 진행된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수원시에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주민J)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한국에서 거주한지 오래되고 한국어 의사소통에 있어 별 어려움이 없더라도 생각하면 조금 떨려요. 하지만 제가 이주해서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수원시 위원회 위원이 된다면 **열심히 준비해서 참여할 의향**이 있어요.

이주민S) 수원시 위원회 참여는 수원시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고, 그 안에서 이주민에게 진짜 필요한 부분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것 같아요. 다만 한국어 의사소통이 선주민과는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내용을 공지**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주민B) 시간이 맞으면 무조건 참석할 의향이 있어요. 다만 의견을 하나 제시하자면 일을 하는 이주민의

경우에는 평일 오후에 위원회 회의 참석이 어렵기 때문에 위원회 **회의를 주말에도 개최**하거나 혹은 **평일 저녁에 개최**한다면 참석률이 더욱 높아질 것 같아요. 대체로 평일 낮 시간에 진행되고 있는 관행을 살짝 바꿔본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주민K)** 위원회에 이주민이 함께 참석하는 건 매우 좋은 거 같습니다. 다만 위원회 참여 전 사전 오리엔테이션 혹은 교육에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리더**가 있으면 더욱 발전하는 기회가 될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 리더가 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주민들을 이끌어 준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꼭 한국인 리더가 아니더라도 한국으로 이주한지 오래되었거나 수원시정에 관심이 많은 이주민이 리더 혹은 멘토로서 함께 움직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주민에게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중 ‘커뮤니티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재는 매우 주춤한 상태이고 예산 부족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으나 이전처럼 활성화될 수 있기를 원하는 의견이 많았다. 관련하여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조직 재정비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주민Z)** 코로나19 상황 이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자조모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고,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민이 있어도 자조모임 **자체를 못하고 있다** 보니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해결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다소 **활발해졌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커요.

**이주민I)**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 자조모임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는 예산이 없어서 어려운 상황이에요. 원래는 교민회별로 구성되어 있는 **자조모임을 통해 서로 친목도 도모**하고, 근황도 확인하는 등 **긍정적인 요소**가 많았는데 예산부족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니 많이 아쉽죠. 반영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주민 자조모임에 대한 관심과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주민A)** 초창기에 자조모임을 시작할 때는 정말 ‘자조모임’ 형태로 운영되어 구성원끼리 식사를 하면서 자조모임을 가져도 관련 예산 승인이 나왔던 시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산이 줄어들거나 아예 삭감되는 등의 변화를 겪으면서 현재는 자조모임 내에서 회의를 진행하거나 혹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의 **의무사항이 늘어나면서 자조모임 자체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이주민T)** 현재 제가 있는 교민회의 자조모임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여도 **구성원의 자비로 7년째 꾸준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다만 이전처럼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은 있으나 구성원의 의지로 이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예산이 아니더라도 자조모임 내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더욱 활성화되기 좋은 모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주민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게 된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가족 및 지인 소개 혹은 우연히 관련 기관을 발견하게 되어 사회참여하게 되었다고 답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주민 사회참여와 관련한 홍보 및 정보 전달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주민Q) 한국으로 이주하고, 수원시에 정착하면 전입신고 등의 이유로 꼭 한 번은 찾아가야 하는 **행정복지 센터의 직원분**께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어 다양한 사회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만약 그때 정보를 받지 못했더라면 지금처럼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 의사소통의 한계와 문화적 차이 등이 있지만 덕분에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이주민V) 현재 위치로 센터가 이전하기 전에 있던 곳이 **우연히 집 근처**였어요. 매번 이주민으로 보이는 외국인들이 자주 보여서 **호기심에 센터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때의 기회가 현재까지 이어져서 현재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만약 그때 우연히 센터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재미없는 한국 이주생활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주민H) 코로나19 상황이 한참 심할 때 한국으로 들어와서 대부분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수강하였습니다. 이후 현재 센터와 연계되어 단기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울 때보다 일하면서 다양한 이주민과 선주민과 함께 있는 현재가 좋습니다.

이주민C) 한국으로 이주한 이후 집에서 가만히 있는 나를 보고 **남편이**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수원시에 이주민을 위한 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수업 및 프로그램을 통해 적응을 한 다음 지금은 여기서 통·번역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엄마, 아내 혹은 며느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서 존재하는 것 같아서 매우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 2. 이주민 유관기관 실무자

### 1)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수원시 이주민 유관기관 실무자 대상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주민의 위원회 참석에 대해 단순히 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여 선주민과 함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한다면 매우 상징적이고 모범사례로 발전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선출 및 이주민 집중 거주 지역 내 이주민 통장 시범사업 등으로 다양하게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었다. 다만 일회성 정책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지속되어야 다양한 이주민 사회참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관련하여 수원시 위원회 중에서 이주민이 참여 가능한 위원회를 선정하여 선주민뿐만 아니라 이주민도 위원으로 참여하여 이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교류 및 소통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행하는 좋은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장 실무자N) 이주민이 수원시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이주민들의 **고충 및 다양한 의견들이 대·내외적으로 표현**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이주민들 사이에서 **알음알음 퍼지다보면 더욱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할 것**이므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분명 **초기에는 처음 시도되고 여러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지만 경험이 쌓이다

보면 운영에 있어서도 **수원시민의 노하우**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 실무자G)** 이주민의 위원회 참여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동의해요. 다만 위원회에서 소위 말하는 이주민이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위원회에서 이주민을 대표하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혹은 위원으로 참여하는 이주민이 겪고 있는 다양한 고충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의견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와 분위기 및 문화 등의 조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닌 선주민과 동일하게 의견을 낼 수 있는 이주민으로서 참여한다면 수원시정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현장 실무자K)** 일회성 혹은 단기적인 참여가 아니라 선주민과 동일하게 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촉하여 참여하게 된다면 그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내에서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게 하여 추후에 수원시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이주민 사회참여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 혹은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하나의 통로 및 창구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앞에서 말했듯이 이러한 움직임이 **잠시, 잠깐이 아니라 꾸준히** 이루어져야 지역사회 내에서 이주민의 역할이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이주민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이주민 밀집 지역인 ‘매산동, 세류동, 고등동’을 대상으로 ‘명예통장 제도’의 시범실시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수원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동장이 통장을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주민의 비율을 높여 하나의 통로를 만들어 준다면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2013년 5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2023년 기준으로 청주시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등에서 활발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장’은 지역사회 내에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과 수원시와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주민 명예통장 제도를 통해 상징성과 실제로 적극적인 사회참여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현장 실무자J)** 주민자치회로 변경된 이후로 동장이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이 있으므로 이주민에 대한 비율을 높이거나 혹은 예를 들어 이주민 1~2명을 임의로 선출, 위촉하여 선주민과 똑같은 위치에서 통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이주민이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나아가 **선주민과의 자연스러운 소통 및 호흡** 등이 가능하므로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서 차곡차곡 쌓다보면 어느새 흡수되어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현장 실무자S)** 최근 들어 통장을 대체로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수원시 내에서 **이주민 집중 거주 지역을 시작으로 이주민 통장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매우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중 거주 지역이므로 이주민에 대한 거부감 혹은 배제 등이 조금 덜 할 수 있으므로 먼저 시범으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실무자N)** 단순히 ‘통장’이라는 타이틀이 주는 상징성도 있지만 ‘이주민 명예 통장’은 이주민으로 하여금 **자신감 혹은 자존감을 높여주는 하나의 제도**가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기관을 이용하는 이주민들이 한국어 의사소통을 수준급으로 구사하지만 막상 선주민들과 무언가 하려고 하면 **주눅이 들거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지 못하는 성향**이 조금 강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를 지속적으로 부여하여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면 이를 토대로 자신감이 향상하게 되고,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입장에서 '이주민 명예통장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수원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어 주민자치와 관련된 선도적인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이므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이주민이 함께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사회참여이면서 매우 상징적인 사회참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동협의체 위원으로도 활동하게 된다면 지역사회 내에서 이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와 사회참여는 없을 것이며, 사회참여에 대해 제대로 알아가는 과정이 될 것이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주민자치회 위원과 동협의체 위원으로서 이주민이 이주민을 대변하고 관련 안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경험을 통해 이주민과 선주민이 교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현장 실무자I)** 사정참여 중 하나로 가장 기초적인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수원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변경되면서 주민자치와 관련하여 매우 선도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서 선주민과 이주민이 하나가 되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수렴한다면 더욱 의미가 있어서 매우 상징적인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장 실무자A)** 특히 주민자치회는 소위 말하는 마을 단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에 대해 논의하고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실제로 이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 어떤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결해 나아가는지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험은 직접 이주민이 해봄으로써 한국사회 혹은 수원시정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거예요.

**현장 실무자O)**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자면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있는 동협의체에도 이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주민 중에서도 초기 이주민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혹은 취약계층 이주민의 발굴 등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금 보다 더욱 많은 이주민, 이주민 가구의 사례들이 발굴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수원시에는 많은 이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국적별 재수원교민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서 자조모임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주민이 함께하는 커뮤니티를 활성화시켜 커뮤니티 내 다양한 의견들이 외부로 나올 수 있도록 선주민이 멘토 혹은 리더로서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면 더욱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현장 실무자 심층면접조사에서 제시되었다.

더불어 수원시에는 중국동포의 비율이 높으므로 중국동포 커뮤니티와 상인회 등을 연계하여 수원시 다문화 푸드거리 홍보 및 다양한 축제 등 다방면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장 실무자T)** 재수원교민회 내 커뮤니티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수원시에 많은 이주민이 거주하고, 그들이 다양한 사회참여를 통해 선주민과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겪는 고충과 선주민이 겪는 고충의 결을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 혹은 의견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대로 노출되기 힘들기 때문에 국가별로 조직되어 있는 커뮤니티를 통해 그들의 목소리와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현장 실무자E)** 실제로 재수원교민회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2~3년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펜데믹을 지나 엔데믹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이전처럼 활발한 운영을 통해 이주민이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들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여건이 형성된다면 선주민 멘토 혹은 리더를 두어 그들이 이야기 하는 의견들이 공식적으로 외부에 알려질 수 있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현장 실무자R)** 사회참여의 일환으로 커뮤니티의 활성화에 대해 매우 찬성합니다. 실제로 커뮤니티 내에서 정서적 지지 혹은 경제적 도움을 위한 정보 습득 등 다양한 교류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주민에게 커뮤니티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도움을 어떻게 청해야할지 모를 때 다른 이주민의 도움으로 지원을 받는 등의 사례가 있으므로 이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고, 나아가 교류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장 실무자E)** 수원시는 중국동포의 비율이 매우 높으므로 중국동포의 사회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므로 이미 조직되어 있는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중국동포 커뮤니티와 상인회 등을 연계하여 수원시 다문화푸드거리와 홍보와 관련 행사 및 축제 등을 연결하는 거예요. 차차 구체적인 구상이 필요하지만 중국동포들의 커뮤니티를 잘 활성화한다면 다방면으로 좋은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주민과 관련된 정책 및 관점 등은 여전히 시혜적이며, 수동적인 지원들이 대부분인 상황이다. 이를 전환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관련하여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 및 운영하여 이주민의 리더십 함양, 자기개발 등의 기회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수원시 이주민 지원 기관을 이용하는 이주민 306명을 대상으로 거주기간을 살펴본 결과, 11년 이상이 22.5%로 나타나(이영안 외, 2022) 장기 거주 이주민을 위한 다양한 역량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현장 실무자J)** 여전히 시혜적인 관점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를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역량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때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혹은 다른 이주민 지원 기관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법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 실무자P)**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민의 리더십 함양 및 자기개발 등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운영한다면 이주민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자신감 및 자존감 또한 더욱 상승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등의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해요.

### 제3절 소결

다양한 질적인 내용을 이끌어 내기 위해 실시한 이주민과 유관기관 실무자 대상 심층면접조사에서 다양한 유의미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먼저 이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재수원교민회, 다누리꾼, 서포터즈,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회참여 현황,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사회참여 경로 등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체로 이주민들은 한국으로 이주하기 전·후에도 사회참여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한국으로 이주 후 사회참여 경험이 없는 이유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사회참여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서였으며, 그 외 봉사활동과 같은 자발적인 사회참여를 하기 위해 직접 행정복지센터 및 관련 기관에 방문한 적이 있지만 대체로 선주민과의 잦은 마찰 및 사회적 인식 차이 등으로 그만둔 경우가 많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이주민의 사회참여와 관련된 홍보와 선주민의 다문화 인식 개선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만 이주민의 사회참여가 쉽지 않으므로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수원시 위원회 참석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하였다. 다만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위원회 내용을 공지해주거나, 사전 교육이 있다면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이주민 유관기관 실무자 대상 심층면접조사에서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언급된 것은 다음과 같다. 이주민이 수원시 위원회 참여도 매우 유의미한 사회참여라고 볼 수 있지만, 이와 함께 주민자치회와 동협의체 위원으로 활동도 매우 의미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이주민이 선주민과 함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작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지속적으로 생긴다면 이주민들로 하여금 자신감과 자존감이 더욱 향상하여, 수원시가 주관하는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이주민이 선주민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매우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이주민이 선주민과의 접촉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위원회에 참석하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선주민과 멘토-멘티를 구성하여 다양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 및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내 선주민과 동일한 선상에서 활동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이주민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만큼 이를 통해 수원시 내 이주민이 목소리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



## 제5장

# 이주민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제1절 연구요약 및 의의와 한계

제2절 활성화 방안



# 제5장 이주민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 제1절 연구요약 및 의의와 한계

### 1. 연구요약

본 연구는 수원시 이주민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원시 이주민 현황 및 정책 분석 등에 대해 문헌 및 통계를 통해 살펴보고, 객관적인 데이터에서 알 수 없는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수원시 이주민 및 이주민 유관기관 실무자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주민 사회참여의 이론적 배경으로 이주민 사회참여의 의의 및 필요성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이주민 사회참여가 앞으로 더욱 강조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단순한 사회참여를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이자 잠재된 인적자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다음으로 사회참여란 수원시 이주민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수원시 정책형성 과정 등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고, 다른 지역사회 구성원과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정의하고, 사회참여의 범위를 사회 영역인 지역주민 활동, 지자체 관련 활동, 이주민 단체 활동으로 설정하여 수원시 내 이주민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참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실시된 심층면접조사의 조사대상은 수원시 재수원교민회, 서포터즈, 다누리꾼, 종사자,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주민분과 위원, 유관기관 관계자로 그룹화하였다. 이주민의 개인적 특성(인구학적 특성, 가족관계 및 이주 이전 경험, 한국어 능력 수준 등)과 사회참여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 중심으로 질문하였고,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및 수원시의 지원방안 등으로 구성하여 2023년 3월 15일~4월 21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총 5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를 라운드 테이블 방식을 통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주민 대상 심층면접조사에서는 사회참여의 일환으로 수원시 위원회와 주민자치회 및 동협의체 등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참여하게 될 경우에는 사전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유관기관 실무자 대상 심층면접조사에서도 동일한 의견을 주어 체계적인 사전 교육을 통해 이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나 주민자치회, 그리고 동협의체 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게 하여 단순히 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이주민 명예통장의 시범 실시와 기존 추진되고 있는 토론회나 공청회를 보다 활발하게

추진할 것과 수원 시민 대상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을 확대하고,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하는 커뮤니티 구성 및 운영하며, 이주민의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주요 결과로 도출하였다.

## 2. 연구의의와 한계

본 연구는 최근 들어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게 된 '이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참여의 범위를 지자체 관련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활동과 이주민 단체 활동까지인 사회 영역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수원시 이주민 및 이주민 지원 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이주민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의를 지니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도 존재한다. 첫째, 이주민 사회참여의 범위이다. 이주민 사회참여의 범위를 사회 영역뿐만 아니라 문화·교육, 자녀교육, 경제 및 취업 등의 개인 영역과 지역행사나 축제 참여 등의 기타 영역까지 포괄한다면, 이에 따른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도 보다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 영역으로 사회참여의 범위를 설정한 것이 본 연구의 의의이면서도 한계로 볼 수 있다.

둘째, 심층면접조사이다. 이주민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이주민과 이주민 유관기관 실무자를 대상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그들의 경험과 심층적인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이주민과 유관기관 실무자로 조사 대상자가 제한되어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의 의견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주민과 수원시민 대상으로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이주민 대상 설문은 다양한 국어로 제시하여 보다 많은 이주민들의 요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제2절 활성화 방안

### 1. 수원시 위원회 참여

다민족·다인종·다문화 사회의 도래는 이주민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 이전에는 시혜적 차원으로 접근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지원 및 시혜의 대상이 아닌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이주민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이끌어야 하는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 수원시 이주민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원시 거주 이주민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로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위원회 참여’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전교육’이 진행된다면 위원회의 사항에 대해 더욱 면밀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이주민 유관기관 실무자 대상 심층면접조사에서는 단순한 위원회 참여가 아니라 실제로 이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대변되고, 실질적인 목소리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이주민이 참여해야 바람직한 이주민의 사회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별, 비자별, 유형별로 다양하게 이주민을 포함시켜 위원회 특성 및 성격 혹은 안건 내용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준비단계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수원시 위원회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위원회 사전교육 및 위원회 참석 전 오리엔테이션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꼽았다.

이와 같이 내용을 반영한다면 이주민이 수원시 위원회 위원으로서 선주민과 함께 다양한 시정 현황 및 운영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주민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수원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원시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초반에는 다소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으나, 매회 여러 가지 사안들을 수정 및 보완해 나아가다보면 수원시만의 노하우가 쌓이고, 추후엔 모범사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거주 이주민이 밀집된 수원시의 중요한 구심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2. 이주민 명예통장 제도 시범 실시

수원시 내 이주민 밀집지역으로 꼽히는 매산동, 세류동, 고등동 등을 대상으로 ‘이주민 명예통장 제도’를 시범 실시하게 된다면 선주민과의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주민의 사회참여를 도모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주민 명예통장 제도’의 시범 실시를 통해 수원시 내 거주하는 이주민이 더 이상 ‘다른 나라 사람’, ‘외국인’, ‘이주민’ 등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생활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와 문화 등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관련하여 청주시는 이주민의 증가로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기관의 소통창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통장 모집 공고와 '제1기 외국인 주민 명예 이·통장' 위촉식을 가졌다(〈그림 5-1〉 참조). 위촉자는 8개 나라(중국,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몽골, 러시아, 일본, 인도) 출신 18명으로 이들은 청주시와 외국인 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맡아 다양한 정책 홍보,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적용, 생활편의 향상에 필요한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임기는 2년으로 분기별로 1회 정기회의를 열어 외국인 관련 주요 현안 해결과 정책 개발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세계일보, 2022.06.22. 보도자료).

그림 5-1 | 청주시 외국인 주민 명예 이·통장 모집 공고

**청주시  
외국인주민  
명예 이·통장 모집**

**2022. 5. 11.(수) ~ 5. 20.(금) 09:00 ~ 18:00**

<p><b>모집인원</b> 20명 내외(중국,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몽골, 필리핀 등)</p> <p><b>임기</b> 위촉일로부터 2년 (연임 가능)</p> <p><b>지원자격</b> - 청주시에서 1년 이상 거주자로 임기 동안 체류 기간이 보장된 자 -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자 (간단한 홍보물 번역 가능한 자 우선 선발) - 다양한 정책 제안 및 현장 의견수렴이 가능한 자</p>	<p><b>접수방법</b> 방문(청주시청 자치행정과, 거주지 읍·면·동), 이메일</p> <p><b>선정방법</b> 서류심사 및 우선 면접 (지원자가 많을 시 대면 면접)</p>
--	---

**문의 | 자치행정과 시정팀**

청주시 CHONGJU CITY

자료: 세계일보, 2022.02.22. 보도자료

더불어 서울특별시 구로구도 보다 많은 주민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3년 1분기 '다문화 명예통장'을 공개 모집하고 동장과 주민단체 대표, 외국인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추천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기별로 위촉하게 된다. 2022년 4분기에 활동한 '다문화 명예통장'은 총 36명이며, 신청자격은 해당 동에 3년 이상 거주하고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으로 등록 외국인은 임기 동안 체류 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시정일보, 2022.11.10. 보도자료).

이처럼 지역사회 내에서 이주민이 선주민과 함께 교류하고 화합할 수 있는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이주민 명예통장 제도'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활동을 도모하고, 차츰차츰 이주민이 지역사회 내에서 구성원으로서 인정받는 하나의 통로를 만들어 준다면 더욱 활발한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주민 유관기관 실무자 대상 심층면접조사에서 이주민 명예통장 제도의 통장 모집 시, 수원시

는 주민자치회로 변경되고 나서 각 지역 동장이 추천할 수 있는 통장의 인원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주민의 비율을 일정 부분 할당하여 이주민이 직접 통장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준다면 지역사회 내에서 충분히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다. 따라서 수원시는 이주민 명예통장 제도의 시범 실시 및 이주민 통장 인원 할당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 3. 주민자치회 및 동협의체 참여

이주민 유관기관 실무자 대상 심층면접조사에서 이주민이 일회성 혹은 단기적으로 참석하는 것보다 전반적인 수원시정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참여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선주민과 함께 이주민에게 다양한 기회를 부여하여 지속적으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며 ‘주민자치회 및 동협의체 참여’를 꼽았다.

주민자치회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 및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 등을 위하여 동에 설치하여 주민들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주민총회 개최, 마을자치계획 수립, 공동체 형성 등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수원시청 홈페이지).

2022년 12월 매교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44개 모든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됨에 따라(〈그림 5-2〉 참조), 동 주민자치 조직으로 주민의 자치활동을 강화하는 역할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 기능에 실질적인 주민협의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더해진다(뉴스핌, 2023.01.02. 보도자료).

그림 5-2 | 수원시 금곡동 주민자치회



자료: 뉴스핌, 2023.01.02. 보도자료

따라서 이주민의 주민자치회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내 발생하는 다양한 사안이나 문제 등에 대해 직접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이주민의 목소리를 내어 지역사회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을 확인하는 과정에

서 더 이상 이주민은 우리 지역사회 내에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도움을 함께 줄 수 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마련될 것이다.

관련하여 수원시는 마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지역을 잘 아는 주민이 사업을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마을리빙랩’을 올해 주민자치회의 기존 발굴사업과 연계하여 도입하고, 2024년에는 민·관·학 등 참여기관을 다양화해 마을리빙랩을 발전시킨 후 2025년에는 마을리빙랩을 정착 및 확산할 계획이다(뉴스핌, 2023.03.27. 보도자료).

이와 함께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동협의체는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이다(그림 5-3) 참조). 구성인원은 10명 이상이며, 임기는 2년으로 기수별 위촉과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해 연임가능하다. 동협의체의 주요 기능은 관할 지역 내 사회보장대상자 및 자원 발굴, 사회보장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 및 지원,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역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 특화사업 수행 등이다(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홈페이지). 따라서 동협의체에 이주민 위원을 적극적으로 위촉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주민 혹은 이주민 가구의 다양한 사례 발굴 및 서비스 연계·제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3 |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홈페이지



자료: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홈페이지

## 4. 토론회 및 공청회 참여 활성화

이주민 유관기관 실무자 대상 심층면접조사에서 수원시의 다양한 토론회 및 공청회에 ‘이주민’이 토론회 및 공청회의 일원으로서 참석하여 의견을 듣고, 답하는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단순하게 이주민으로서 자리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전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고, 다함께 토론하는 등의 참여를 통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 어떤 안전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이주민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관련하여 수원시와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수원시지속가능발전 8번 목표 위원회(성평등과 다문화 사회 실현)가 공동으로 ‘2022 이주민 청책(聽策) 포럼- 수원특례시 with 이주민’을 개최하였다(〈그림 5-4〉 참조).

그림 5-4 | 수원특례시 with 이주민 개최



자료: 경기신문, 2022.09.18. 보도자료

베트남 출신 활동가는 이주민 여성의 생애주기에 알맞은 맞춤형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국출신 이주여성협회 대표는 선주민과 이주민이 공존하려면 이주민들을 통제·통합 대상이 아닌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할 때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경기신문, 2022.09.18.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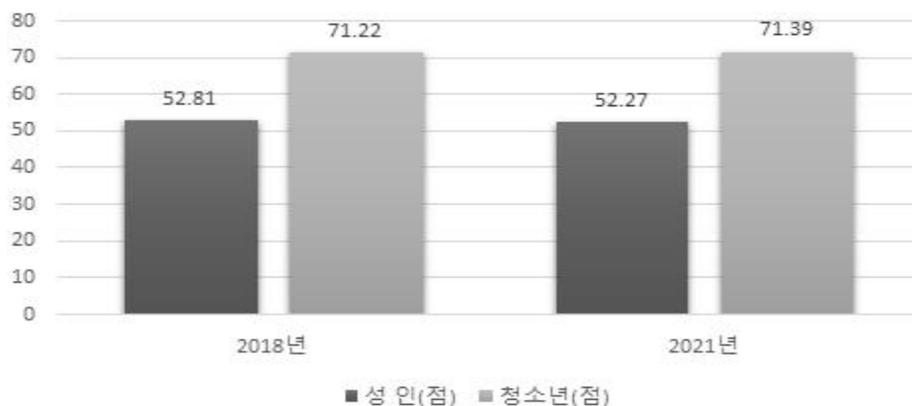
이처럼 이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토론회 및 공청회를 통해 이주민이 지역사회 내에서 구성원으로서의 인정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고 선주민과 소통하는 공식적인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수원시는 이주민 관련 주제의 토론회와 공청회를 추진하거나, 수원시 사안에 대한 토론회와 공청회에 이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토론회와 공청회를 활발하게 추진한다면 보다 좋은 모범사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 5. 선주민<sup>1)</sup>의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확대

이주민을 수원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은 이주민 사회참여와 매우 연관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여전히 일상생활 전반에 만연한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인종 및 국적 등에 따라 이주민을 차별하는 분위기와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선주민 대상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의 확대는 앞으로도 꾸준히 필요하다.

2012년부터 시작된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는 3년 주기로 실시되며,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정도를 파악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은 52.27점으로 청소년의 71.39점에 비해 19.12점 낮게 나타났다. 또한 2018년 조사에 비해 성인은 낮아지고 청소년은 소폭 상승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5-5〉 참조).

그림 5-5 | 성인과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



자료: 여성가족부 블로그

관련하여 성인의 다문화 교육 참여율은 5.2%로 나타났고, 청소년은 53.6%로 2018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성인과 청소년 모두 다문화 교육 참여자의 수용성 점수가 미참여자 보다 각각 4.86점, 2.38점 높아 2018년 조사에 이어 다문화 교육 참여가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22).

수원시는 선주민의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이주민에 대한 인식을 도모하고자 ‘공직자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사업’,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의 대상자가 공직자나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학교 등 아동유관기관의 아동, 일반시민 등 다양하지만, 대상자가 수원시민 중에서도 한정적이므로, 기존 사업 및 대상자 확대가 필요하다. 따라서 수원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및 활용할 필요가 있다.

1) 선주민이란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한국사회, 수원시로 이주한 이주민 외의 기존 지역사회 구성원(수원시민)을 총칭함

## 6. 선주민과 함께 커뮤니티 구성 및 운영

재수원교민회 소속 이주민 대상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가별 커뮤니티가 구성되어 있으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이전처럼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펜데믹이라는 기나긴 터널을 지나 2023년 상반기부터 엔데믹이 선언된 만큼 이미 구성되어 있는 커뮤니티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함께 이주민 유관기관 실무자 대상 심층면접조사에서는 수원시에는 거주 이주민이 많지만 여전히 선주민들과는 다소 다른 위치에 있으므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부담감을 느껴 현실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현황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이미 구성되어 있는 커뮤니티를 더욱 활성화시킨다면 이주민의 의견을 듣는 하나의 방법이자 새롭고 다채로운 의견을 수집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주민끼리 조직된 커뮤니티도 정서적 교류 및 다양한 정보 교환 등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커뮤니티 내에서 파생된 다양한 의견들은 이주민만의 이야기로 묻히기 쉽다. 따라서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커뮤니티를 구성하게 된다면 이주민들만의 커뮤니티 내에서 언급된 사항이나 욕구 혹은 고충 등이 이전보다는 더욱 수월하게 공식적으로 외부로 전달될 수 있을 것이며, 선주민이 멘토 혹은 리더로서 이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면 더욱 좋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처럼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커뮤니티의 재정비를 통한 활발한 운영과 함께 선주민을 멘토 혹은 리더로 배치하여 이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이끌어주고, 이와 같은 내용들이 공식적인 안건이 되어 위원회나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다면 이전보다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와 분위기, 그리고 환경이 조성되어 매우 좋은 선례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다만 기존 커뮤니티의 활발한 운영과 선주민이 함께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주민 혼자만의 노력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수원시가 적극적으로 예산, 장소, 모집 등의 지원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공식적인 사회참여인 수원시 위원회와 명예 통장, 주민자치회와 동협의체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사회참여의 활성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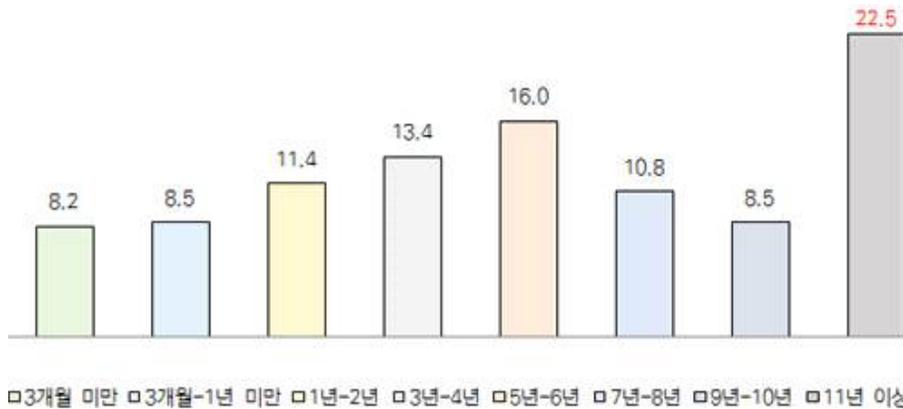
## 7. 이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수원시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가 현재까지 이주민을 바라보는 시선 및 정책, 프로그램 등을 살펴보면 주로 이주민의 생활적응과 관련된 수동적인 지원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이러한 관점에서 벗어나 이주민이 직접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주민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2022년에 진행된 「수원시 이주민 지원 실태 및 정책 방향 연구」에서 수원시 내 이주민 지원 기관을 이용하는 이주민 306명을 대상으로 수원시의 거주기간을 살펴본 결과, 거주기간 중 11년 이상이 22.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5-6〉 참조).

그림 5-6 | 수원시 이주민 지원 기관 이용자 거주기간



자료: 이영안 외(2022), 「수원시 이주민 지원 실태 및 정책 방향 연구」

이러한 결과는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수원시 이주민 지원 기관을 이용하는 이주민의 경우에는 이미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장기 이주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초기 입국 이주민에 초점이 맞춰진 프로그램 등은 다소 맞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초기 적응이 필요한 이주민과 수원시에 장기 거주한 이주민을 구분하여, 그들에 맞는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여 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구성원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앞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언급된 이주민 명예통장이나 주민자치회 및 동협의체 참여 등과 관련하여 ‘이주민 명예통장 프로그램’ 및 ‘이주민 리더 프로그램’, ‘이주민 멘토-멘토 프로그램’ 등을 이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이주민 사회참여 시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여 리더십 함양 및 자기계발 등의 기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참여하는 이주민의 자신감과 자존감도 상승하고, 이러한 기회로 이주민이 선주민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지역사회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국문자료

- 강수향. (2011). 이주민 유인의 인구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내국인의 지각과 이주민 지원 및 사회참여에 대한 내국인의 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국가인권위원회. (2018). 이주민의 권리에 기반한 사회통합 방안 실태조사.
- 김상운. (2016). 제노포비아 확산에 따른 경찰의 대응방안. 한국콘텐츠학회지, 16(4), 408-417.
- 김선경. (2011). 중년여성의 사회참여와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김정순. (2009).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박종보, 조용만. (2006). 다문화가족지원법 마련을 위한 연구, 여성가족부.
- 박세훈. (2011). 한국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의 비판적 성찰: '다문화 도시정책'의 제언. 공간과 사회, 21(2), 5-34.
- 법무부. (2022). 2022년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 법무부. (2022). 202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 변수정, 정희선, 김기태, 이창원, 김희주. (2021). 사회통합의 또 다른 시각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설동훈. (2017). 한국 내 이주민의 권리 보장: 동향과 쟁점. 월간 복지동향, (230), 5-13.
- 성은혜. (2011). 부산의 다문화정책 거버넌스 수준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사회과학연구, 27(2), 247-248.
- 송혜련. (2019). OECD 주요국의 이주정책과 이주민 특성분석. 노동정책연구, 19(2), 41-71.
- 서울시. (2013.05.07.). 서울시, 외국인 최대 밀집지 영등포에 첫 '다문화마을공동체' [보도자료].
- 수원시. (2019). 2019년 수원시 외국인·다문화정책 종합계획.
- 수원시. (2023). 다문화정책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 양기호. (2006). 지방정부의 외국인대책과 주민 분류방식 및 용어사용의 부처별 차이와 문제점.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8(2).
- 유민이. (2019). 이주민에 대한 국민수용성 제고사업 추진현황 및 과제. 이민정책연구원.
- 이영안, 이혜연. (2022). 수원시 이주민 지원 실태 및 정책 방향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 이용승, 이용재. (2013). 이주민 정치참여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대구·경북지역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민족연구, 53, 110-130.
- 이정석. (2008). 경남지역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경남발전연구원.
- 이정석, 오재환, 윤지영. (2016). 부산시 외국인주민 사회통합 정책연구. 부산발전연구원.
- 이정석, 이혜진. (2014). 외국인주민의 시정참여 활성화 방안: 진주시를 중심으로. 한국정부학회, 14(3), 324-344.
- 이창원. (2015). 이주민 분류방식 및 용어사용의 부처별 차이와 문제점. IOM이민정책연구원.
- 장주영, 김수경. (2020).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이주민 유입과 사회통합. 한국개발연구원.
- 정기선, 오정은, 김환학, 최서리, 신예진, 정영탁. (2012). 이주민의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통합 정책 연구. IOM이민정책연구원.
- 정동재, 윤영근, 염지선, 류현숙, 김태희. (2022).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방안 설계. 한국행정연구원.
- 최영미, 전경숙, 정은지. (2015). 경기도 외국인주민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외국인 밀집지역의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방안. 1-184.

한아름, 김여진. (2012).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활동, 문화적응스트레스 그리고 우울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2(33), 75-104.

행정안전부. (2019-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행정안전부. (2021.11.17.).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 215만명, 발표 이래 첫 감소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2022.10.31.).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 213만명, 2년 연속 감소 [보도자료].

황정미, 문경희, 양혜우, 정승희. (2009).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현황과 증진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 영문자료

---

Jeannotte, M. Sharon. (2008). *Promoting Social Integration—A Brief Examination of Concept and Issues*.

Krueger & Casey. (2009). **포커스그룹**. 민병오·조대현(역). 명인문화사, 2014.

Stewart & Shamdasani. (2015). **포커스그룹 연구 방법론**. 강종구·김영표·정광조·최종근(역). 학지사, 2021.

---

## 신문기사 / 웹사이트 / 통계자료

---

경기신문. (2022.09.18.). '이주민을 진정한 시민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https://www.kgnews.co.kr/mobile/article.html?no=718354>

뉴스핌. (2023.01.02.). 수원시 44개동, 주민자치위원회서 주민자치회로 전면전환. <https://m.newspim.com/news/view/20230102000896>

뉴스핌. (2023.03.27.). 수원시, 45개 '마을리빙랩' 사업추진...주민자치회 주도.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327000202>

세계일보. (2022.06.22.). 외국인 거주자 200만 시대...청주시도 외국인 명예 이·통장 도입. <https://m.segye.com/view/20220622508568>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홈페이지. <https://www.swwelfare.org/>

수원시청 홈페이지. <https://www.suwon.go.kr/index.do>

여성가족부 블로그. (2022.03.31.).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발표.

KOSIS 국가통계포털통계청. (2020). 2020년 한국 체류 외국인. <https://kosis.kr/index/index.do>

연구책임자 이영안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이해연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연구 자문위원 김영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원)  
전경숙 (평택대학교 교수)

SRI-전략 2023-08

## 수원시 이주민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Social Participation of Migrants in Suwon City

발행인 김성진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우편번호) 16429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http://www.suwon.re.kr>

인 쇄 2023년 06월 31일

발 행 2023년 06월 31일

ISBN 979-11-6819-121-1

© 2023 수원시정연구원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이영안. 2023. 「수원시 이주민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비매품